
재중 탈북자 인권관련
전문가 간담회 자료

2007. 3



재중 탈북자 문제는 1995년 이후 그 수적 증가와 비인도적 강제송환 문제 등으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중 하나로 이슈화되었다. 더불어 이 문제는 최근 탈북 국군포로 가족의 강제송환 문제 발생, 인신매매, 탈북행렬의 증가 등으로 심각한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학계를 비롯한 NGO단체들에게 재중 탈북자의 탈북원인, 성별, 연령, 직업분포, 거주지, 본국귀국 의향 등에 대한 객관적 조사 및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내 외적 인식과 그 현황 파악, 재중 탈북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한국으로 유도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재중 탈북자의 인터뷰에 근거한 현황 및 실태 파악, 재중 탈북자의 국내 유도 경험을 통해 본 국내 유도 과정에 대한 실태, 재중 탈북자 문제의 발생원인, 체류 상황, 제반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 설명 그리고 재중 탈북자 및 재외 탈북자에 대한 국제사회 일반(INGO, 국제기구, 개별국가)의 시각 및 인식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재중 탈북자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불어 북한인권 관련 전문가와 새터민들 간의 상호보완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협력을 모색하고,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관련 국가기관에 의견 혹은 정책권고 추진할 것이다.

본 책자에 실린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 견해로서 우리 위원회의 입장과 무관함을 밝혀드립니다.

목 차



재중(在中) 탈북자 현황과 실태	1
박 영 자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연구교수)	
탈북자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	73
서 보 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재중 탈북자 현황과 문제 -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75
노 귀 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한 현실적, 점진적 그리고 건설적 접근	96
이 혜 영 · 서 대 교 (BASPIA 공동대표)	
『재중 탈북자의 현황과 실태』, 『한국 가족에 의해 유도 입국 경험 사례』, 사례발표	83
새터민 2인	

재중 탈북자 인권관련 전문가 간담회 자료

재중(在中) 탈북자 현황과 실태

박 영 자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연구교수)

재중(在中) 탈북자 현황과 실태

박 영 자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연구교수)

< 목 차 >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북측의 탈북자 처벌과 이주의 성격 변화 |
| II. 탈북 규모 및 현황 | V. 맺는 말 |
| III. 생활 및 인권 실태 | |
-
-

I. 들어가는 말

- 기존 탈북자 관련 연구 및 접근은 대부분 ‘국내입국 탈북자의 사회정착’ 중심으로 진행. 그 과정에서 난점은 이들의 모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해외탈북자, 특히 대부분인 재중(在中) 탈북자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진행되지 못해, 그들의 현재 삶의 양상이 북한 내에서 습득된 것인지, 재중시 습득된 것인지 혼돈되고 있음. 그러므로 재중 탈북자 조사 및 연구의 체계성 필요.
- 기존 재중 탈북자 연구는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탈북발생 배경, 탈북자 인권 실태 및 국제법적 지위, 북측의 송환 후 처벌실태, 보호 및 지원 실태와 방안, 각국의 입장 등을 주요하게 다룸.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집단 세분화 연구 추진 추세.

- 재중 탈북자 관련 조사 및 연구의 출발에서부터 오는 논란과 쟁점은 ‘규모 추정
의 부정확성’임. 그 규모 추정은 조사방법, 중국정부의 협조, 비용문제, 조사인력
구성문제 등으로 정확한 추산이 어려운 상황. 특히 중국정부는 북중관계 및 중
국 변방 소수민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식량난으로 인한 경제적 불법월경자’라
는 기본입장을 지속하면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접근불허 등 재중 탈북자
에 대한 공개적인 실태조사를 어렵게 함. 따라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재중 탈북자 규모를 추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및 국내 관련 단체들의 조사를 종합할 때, 전체적으로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재중 탈북자 규모는 점차 감소하였고, 탈북의 성격과
중국 내에서의 현황 및 실태에 일정한 변화를 보임.
- 그러므로 본 보고서는 재중 탈북자의 현황과 실태 관련 시계열적 변화 및 그 함
의를 중시하여 2000년을 기점으로 그 전후의 이주 규모 및 현황과 생활 및 인권
실태를 살펴본 후, 북측의 탈북자 처벌과 이주의 성격변화, 재중 탈북자 문제해
결의 쟁점 및 다양하게 제출된 대안들을, 문헌과 증언을 교차 비교하여 최대한
객관성을 견지하며 서술함.

II. 탈북 규모 및 현황

1. 2000년 이전

- 이 시기 가장 대표적인 재중 탈북자 조사는 1997년 9월 30일 - 1998년 9월 15일
(11개월간) 좋은벗들에 의해 이루어진 현황조사이다. 조사 장소는 ‘조-중 국경
지역인 압록강, 두만강변의 중국 길림성 장백, 연변지역’으로 북한에서 월경하여
중국으로 넘어와 있는 북한의 식량난민 1,694명을 조사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
중 여성 810명, 남성 884명이며, 20-40대가 전체 80%정도이다. 직업별로는 노동
자가 약 70%, 무직 15%, 농민 5% 가량이고, 출신지별 주요 분포는 함경북도 약
60%, 함경남도 20% 등이다.¹⁾ 현황 중 월경시점은 아래 표와 같다.²⁾

월 경 시 점	인원수 (명)	백분율
97년 8월 이전	31	1.8%
97년 9월	27	1.6%
97년 10월	72	4.3%
97년 11월	163	9.6%
97년 12월	161	9.5%
98년 1월	161	9.5%
98년 2월	181	10.7%
98년 3월	136	8.0%
98년 4월	155	9.1%
98년 5월	79	4.7%
98년 6월	244	14.4%
98년 7월	122	7.2%
98년 8월	150	8.9%
무 응 답	12	0.7%
합 계	1,694	100.0%

- 당시 조사결과, 월경한 후 2주 내에 인터뷰한 사람은 대부분 식량과 약품을 구해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1개월이 지난 사람은 중국에 머물기를 원하는 비율이 높았음.

1) http://www.goodfriends.or.kr/n_korea/n_korea6.html?sm=v&p_no=13&b_no=3306&page=3;

2) 인터뷰 대상자의 월경 시점을 살펴보면 인터뷰시점이 97년 9월부터 98년 8월에 걸쳐 평이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월경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 이 시기 재중 탈북자들은 신분위협, 언어소통, 친척원조 등의 이유로 조선족이 집단 거주하는 연변 자치주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고 조사됨. 당시 윤여상은 재중 탈북자 규모는 약 10만 명 선이며, 대부분 흑룡강성·요녕성·길림성의 동북 3성에 집중되어 있다고 추정(윤여상 1998).
- 이후에도 탈북자 수는 증대하여, 1998년 11월 16일부터 1999년 4월 3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좋은벗들 활동가 10명과 조선족 자치주 조사자 30여명이 중국 동북 3성내 29개 시·현에 속한 총2,479개 마을(연변 조선족 자치주 내 1,566개 마을, 동북3성 내 9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조사에 따르면, 당시 재중 탈북자 규모가 약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좋은벗들 2004).
- 탈북난민보호휴엔청원운동본부는 1999년 10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5개 조사반이 1,383명의 탈북자를 직접 면담하여 「중국 내 탈북난민 현장보고서」를 발표하고 탈북자 규모를 10만에서 20만 명으로 추정. 한편 1999년 말 외교통상부는 주중대사관과 각종 정보 등에 기초하여 재중 탈북자 규모가 1만~3만여 명이라고 추산. 그리고 중국정부는 대략 1만 정도로 추산(김수암 2006).

2. 2000년 이후

- 북한 식량난이 국제사회 지원 등으로 완화되면서 탈북 약화추세이고, 북중 단속이 강화되며 탈북자 규모 줄어듦. 2000년 이후 재중 탈북자 규모는 3만-10만 여 명으로 추산(임순희 외 북한인권백서 2006, 237-8).
 - 2003년과 2004년 중국인권연구협회 사무총장은 중국 내 탈북자가 3만 명 선 일 것으로 추정. 중국 군사과학원 왕이성은 5만 명 이하이며, 그 중 다수가 수차례 월경자이기에 실질적으로는 3-4만 명 선으로 추정.
 - 2003년 미국 NGO Refugee International은 중국 현장방문 조사를 바탕으로 6만-10만 명 정도의 탈북자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추산.³⁾ 2004년 민주노동당은 10월 31일부터 4박 5일간 연변 자치주 일대에서 탈북자 조사를 실시

3) Joel Charney,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the Current Situation and Strategies for Protection," Testimony to the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November 4, 2003.

한 후, 1997년 탈북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 1만 명 이하로 추정된다고 발표.

- 2005년 2월 미 국무부는 탈북자 규모가 98-99년까지 절정에 달했다, 2000년 경에는 7만 5천 명-12만 5천 명 선, 그리고 2005년 현재 약 3만-5만 명 선으로 추산.⁴⁾

- 좋은벗들은 2005년 6-7월 중국 현장조사 결과로 3만-5만여 명으로 추정. 이는 미 국무부의 탈북자 규모 추산을 재확인.

○ 2005년 중순 재중 탈북자 규모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국경경비 및 단속 강화, 북한 내 식량사정 완화, 탈북비용 증가 등으로 신규 탈북자 감소, 여권발급 확대에 따른 합법적 중국 방문기회 증대, 장사를 위한 단기체류 증가 등으로 평가됨(연합뉴스 2005년 8월 21일).

○ 탈북의 내외적 동기는 한편으론 식량난으로 인한 생존위협, 상대적 박탈감 심화, 범죄에 대한 처벌 위협, 탈북자에 대한 처벌과 편견, 더 나은 생활환경에 대한 기대 등 북한 내적 요인과 조선족의 보호 및 지원(점차 성격 변화), 민간단체의 구호활동(재정적 지원은 주로 종교단체에서, 인권 및 난민지위 문제 관련해서는 북한인권시민연합·좋은벗들·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 등이 활동).

○ 그러나 2001년 이후 중국의 대대적 단속으로 재중 탈북자 보호활동을 하던 다수 국내 민간단체들은 현장인력의 추방조치 등으로 인해 중국 현지 지원 사업을 중단. 중국에서의 보호 및 지원활동은 90년대와 비교해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은밀하게 진행됨. 최근 특징은 탈북자 국내입국을 매개하는 일부단체 및 개인들의 활동이 주요 활동으로 나타남(이금순 2005, 19-27; 31-34).

○ 1990년대 후반 탈북자들이 주로 동북3성 조선족 거주지역에 밀집되어 있었으나, 중국당국의 단속 강화와 탈북자들의 중국어 능력 향상 등 현지 적응력이 높아지면서, 한족마을과 대도시 빈민지역으로 이동(연합뉴스 2005년 8월 21일).

4) US State Department of State, The Status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and the USG Policy Toward Them, February 16, 2005.

- 또한 탈북자들이 중국 이외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 몽골과 동남아시아 지역 등으로 이동 시도. 그리고 관련 민간단체 및 자원 활동가의 지원으로 태국, 대만, 호주, 미국 등 세계 각지에 망명 신청 시도.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대부분 체류지 보단 한국행 또는 최종 이주지를 가기 위한 경유지역.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와 몽골 지역은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위한 경유지 또는 대기 지역으로 기능(임순희 외 북한인권백서 2006, 238).

Ⅲ. 생활 및 인권 실태

1. 2000년 이전

- 1995년 연이은 북한지역 내 자연재해와 식량난으로 기아가 극에 달하면서, 96년~97년까지는 중국 내 조선족 친척방문 후 식량지원 받고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친척들도 최대한 이들을 보호. 그러나 북한 식량난이 장기화 되면서 친척이라도 지원에 한계.⁵⁾ 한편 소개로 중국 내에서 일자리를 얻어 돈을 벌고 자 하는 탈북자 증대. 그리고 친척이 없어도 생존을 위해 월경. 중국 조선족들이 동포애 차원에서 의식(衣食) 등을 지원해주기도 함.
- 1997년~98년 조사된 좋은벗들의 재중 탈북자들의 월경장소, 피신장소⁶⁾, 피신처의 안전도 등을 통해 당시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음.

5) 이 시기 조선족들이 적극적인 보호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탈북자의 급속한 증가는 조선족들의 보호능력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또한 한국 경제난의 영향과 더불어 탈북자의 급속히 증대된 유입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조선족의 탈북자 보호실태 및 의지도 점차 약화되고 있었다고 한다(윤여상 1998).

6) 피신장소가 연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난민이 연변지역에 많기도 하지만, 조사자가 난민을 인터뷰한 지역이 연변지역이었기 때문이다.

8 재중 탈북자 인권관련 전문가 간담회 자료

월 경 장 소	인원수 (명)	백분율
훈 춘 시	95	5.6%
도 문 시	382	22.6%
용 정 시	610	36.0%
화 룡 시	480	28.3%
안 도 현	2	0.1%
장 백 현	75	4.4%
집 안 시	15	0.9%
단 동 시	13	0.8%
기 타	5	0.3%
무 응 답	17	1.0%
합 계	1,694	100.0%

피 신 장 소	인원수 (명)	백분율
훈 춘 시	42	2.5%
도 문 시	265	15.6%
연 길 시	355	21.0%
용 정 시	486	28.7%
화 룡 시	309	18.2%
안 도 현	55	3.2%
돈 화 현	38	2.2%
장 백 현	51	3.0%
기 타	31	1.8%
무 응 답	62	3.7%
합 계	1,694	100.0%

피신장소 안전성	안전	불안전	무 응 답	합 계
인원수 (명)	545	935	214	1,694
백 분 율	32.2%	55.2%	12.6%	100.0%
유효 백분율	36.8%	63.2%	-	100.0%

- 피신해 있는 곳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대부분 중국의 친지를 찾아온 사람들이고, 불안전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중국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나이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불안전하다고 응답한 숫자가 많음.
- 또한 재중 탈북자들은 신체의 자유, 노동 및 생계활동의 권리, 교육 및 의료혜택의 권리 추구가 어려움. 특히 노동력 착취나 여성 인신매매 및 성매매 등 각종 인권문제 발생.
- 1998년을 기점으로 당시 주거 및 생활 실태 관련, 주로 은신처와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동포애를 갖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선족 주거지역에 집중 분포. 그 외 농촌지역과 외딴 농가, 동북3성 도시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초기에는 조선족과 후기로 갈수록 한족과 실질혼 관계(동거생활)를 갖고 의식주 해결. 또한 주로 조선족 가정에서 은신해 있으나 한국 종교 및 민간 단체후원을 받는 현지 종교 및 민간 단체 운영의 비공개적 은신처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음(윤여상 1998).
- 한편 조선족 인구밀도가 두만강과 압록강에 가까울수록 높고 멀수록 낮지만, 탈북자는 국경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신변불안 가중으로 쉽게 볼 수 없으며, 국경에서 일정 벗어난 지역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었음. 연길, 용정, 도문 등 도시지역은 은신을 위해 농촌지역보다 어려움이 있으나, 막노동과 유흥업소 등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 쉽게 탈북자를 만날 수 있는 상황. 그러므로 농촌지역과 도심지역 간에 탈북자 분포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함(윤여상 1998).
- 98년 말-99년 초 좋은벗들이 다시 조사한 재중 탈북자 실태를 보면, 여성이 75.5%로 매우 높은 비율. 이들 중 상당 비율인 51.9%는 중국 남성과 동거형태로 생활. 식량난의 장기화로 중국에 시집가기를 원하는 여성들 증대. 중국에 왔다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착하는 경우 늘어남. 미혼여성 뿐 아니라 기혼여

성 또한 생존을 위해 중국 남성과 동거 생활하는 이들 증대됨. 소개로 만나는 경우와 자신도 모르게 팔려가는 경우 둘 다 혼재(임순희 외 북한인권백서 2006, 238-9).

- 당시 재중 탈북자 인권실태 핵심 이슈는 인신매매, 노동착취, 강제송환, 건강과 피 등. 그 중 건강과피 문제는 정신적 및 심리적 피폐화와 어린이의 경우 성장 발육 문제가 지적됨(이금순 1999).

2. 2000년 이후

- 초기와 다르게 탈북자 친척이나 조선족 가정에서 기거하는 비율보다 현지인 가정에서 생활하는 비율 높아짐. 현지어를 익히고 취업하는 등 중국 내에서 적응 능력을 키워 집을 얻어 기거하는 경우가 증가됨. 또한 중국 내 한국인 기업이나 가정에 취업하여 기거하는 경우, 중국 체류 중인 한국 남성과 만나 이성관계를 갖다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됨(임순희 외 북한인권백서 2006, 240). 생존을 위한 과정에서 강제적 및 자발적 인신매매/ 강제적 결혼과 자발적 결혼/ 강제 매춘과 자발적 매춘 등이 혼재되어 있음. 아직 성산업으로 체계화된 상태는 아님.
- 당시 국내입국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재중 체류시절, 생활환경 및 생활비 조달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음(윤여상 2004, 106).
 - 생활환경: 중국인 가정(43명), 조선족 친척집(20명), 일정주거 없음(15), 한국 정부지원처(10), 기타(9), 시민종교단체 운영시설(4), 움막 등 은신처(4), 혼합(2) = 총 107명 조사.
 - 생활비 조달 방법: 직접 노동(42명), 조선족 도움(18명), 중국내 가족친척 도움(14명), 한국내 가족친척 도움(10명), 시민종교단체 한국인 도움(7명), 한국 정부지원(5명), 구걸(1명)기타(6명) = 총 103명.
- 이 시기 재중 탈북자 실태조사들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강제송환, 노동력 착취, 건강악화, 여성의 인권침해 등(곽해룡 2005). 신분불안정, 고용불안, 저임

금, 공권력의 횡포, 성을 매개로 한 협박·폭력 및 성산업 유입, 유인 혹은 강제적 인신매매, 강제송환 등 인권실태(김정아 2005).

○ 생활실태 관련해서 크게 주목할 것은 노동실태와 결혼생활 실태로 구체적 실태는 다음과 같음(이금순 2005, 34-46).

- 먼저 단순 숙식해결과 저임금 노동유형, 취업기회의 문제.

인력이 부족한 중국 농촌지역에서 저임금 노동자 역할. 적발되면 고용주 처벌과 송환. 동시에 이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빌미로 노동착취 존재.

남성의 경우, 강제단속 위험이 낮은 농촌지역 과수원 및 양 목장 등에서 일하다 익숙해지면 도시지역 공장노동자로 취업기회 찾음.

여성의 경우, 식당 및 유흥업소 봉사원, 저임금의 간병인, 가정부로서의 취업 기회를 갖게 됨. 체류기간 장기화되어 현지적응력과 중국어 익숙해지며 식당이나 다방 혹은 노래방 등에서 일함. 또한 조선족으로 위장할 만큼 언어능력과 외모 갖추어 임금수준도 높아짐.

- 여성에 대한 수요 증대와 결혼생활 실태.

중국 남성들의 동거상대로 수요가 매우 큼. 중국개혁개방 이후 산업화 가속화되며 여성들이 취업을 위해 대도시 및 한국 등 해외로 이주해가며 특히 농촌지역 남성들은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늘어남에 따라 성적 대상으로 북한여성에 대한 수요는 매우 큼. 특히 조선족 남성의 경우 탈북 미혼여성과의 의사소통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신부감이 될 수 있는 최적 조건. 또한 중국 동북3성 지역 기혼여성들이 취업 위해 한국으로 단기 이주한 경우에는 이들의 배우자들이 탈북여성과의 동거하는 경우들도 상당수 발생.

그러나 신체적 장애나 주벽 또는 도박벽 등으로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중국 남성들이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하는 경우 탈북여성과의 실질혼 생활에서 오는 문제들. 탈북여성이 동거생활에 불만족하여 도주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상대 남성과 가족들이 탈북여성에 대한 폭행이나 성적 학대를 하는 비율이 높았음.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도 중국 내 체류기간이 길어지거나 강제송환 이후 재탈북하게 되면, 이전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대자를 선택하기도 함. 즉

성적 관계를 매개로 중국 내에서 체류기반 마련할 수 있어 여성들이 남성보다 용이하게 은신할 수 있음.

탈북여성과 중국남성 결혼이 합법적이지 않기에 중국 사회 내 보호 및 안정적인 가족구조와 전망을 갖기 어려움. 20대와 30대 여성들이 가장 높은 비율. 그러나 10대 60대까지 다양.

- 전체적으로 성별 이주노동의 특성이 탈북자들에게도 적용됨. 중국 내에서 남성에게 비해 여성의 수요가 커 여성들의 국경이동이 더욱 활발. 남성의 경우 중국체류 중 단속될 가능성 높으며, 안정적 은신기반 마련이 여성보다 어려워 장기체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한편 북한여성 인신매매 문제제기 지속되나, 태국·캄보디아·베트남 등과 달리 국경이동 북한여성들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에서 성산업에 투입되기 위한 조직적 인신매매는 규모면에서 적음.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여성 및 여성아동 성매매 시장이 정책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비해, 중국에서의 성산업은 수요는 존재하나 정부차원에서 엄격한 통제. 따라서 탈북여성들은 이제까지 대부분 상업적인 매춘보다는 중국 남성과의 동거를 위한 거래에 관여되게 됨. 즉 동남아시아 사례와는 달리 불법도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이들을 강제노동에 활용하기 위한 조직적인 인신매매가 보편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이금순 2005, 46).

3. 재중 탈북여성 생활실태와 인신매매

- 초기 탈북여성들의 실태로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성매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동거상태로 인한 탈북여성 인권문제, 출산해도 합법적인 호구를 취득할 수 없어 사생아 양산, 낙태 시도와 불법 낙태, 낙태 비용문제 등으로 건강 침해. 더욱이 안정된 사실혼 생활을 하는 여성보다 대부분 여성들은 알콜중독자, 도박꾼, 성격과탄자 등에 팔려 감시와 감금, 구타와 폭행, 원치 않는 임신, 강요에 의한 매춘 등으로 정신 및 육체적 고통 등을 당하고 있다는 실태들(백영옥 2002, 249-251).

- 재중 탈북여성 13인의 생활체험을 심층적으로 면접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의 생활 및 의식 실태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김태현·노치영 2003, 99-207).
 - 목표달성의 난감함: 언어와 생활차이, 예상치 못한 난관, 적응의 시간 등.
 - 노출됨의 위험성: 불안정한 지위와 강제송환, 인신매매 위협, 탈북자끼리도 신분노출 위험으로 접촉을 피해야 하는 상황 등.
 - 신변안전을 위한 선택: 남편 만나기, 결혼 결정하기(못 사는 조선의 여성임을 타하기)
 - 결혼생활에서 적응의 어려움: 중국식 가사와 육아 등 여성역할에 적응문제, 중국여자로 '가장하기', 신변위협에 불안함으로 정신적·육체적 질병 특히 하혈·빈혈·허리통·생리불순·임신/낙태/산후관리와 관련된 질병·성병 등등.
 - 치부당함의 억울함: 무시·비방·차별·협박, 그리고 매 맞기, 눈치보기의 굴욕감.
 - 이로 인한 성격의 왜곡: 대부분 여성들은 탈북한지 4년 이상 되어 중국현실에 적응해 살면서 삐뚤어지고 악한 성격으로 변했다고 함.
 - 향수: 혼자로서 외롭고 서글픔,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러나 현지생활에 만족할 때 북에 두고 온 가족이 덜 생각난다고 함. 현지생활 어려울수록 향수 큼).
 - 생활의 지루함: 북한에선 엄격한 조직생활과 여러 일들로 바빴음. 그러나 특히 농촌지역 재중 탈북여성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밭에서 일만하기에 생활의 변화가 없어 재미가 없다고 함.
 - 화폐사용의 어려움: 북한에서 돈의 의미 및 활용이 그리 크지 않았기에.
 - 삶의 전략을 터득하기: 자존심 꺾고 참기, 복수를 상상하기, 주위 사람들과 적정선을 유지하기, 아이 낳지 않기, 새로운 사고로 전환하기(사회적응을 위한 물질 및 이해관계 중시, 발전모색 등)
 - 중국생활의 의미 재발견: 중국이 잘 살게 된 개혁개방 실감하고 북한당국의 왜곡된 사회화에서 깨어나기, 개혁개방에서 느끼는 자유로움, 결혼의 의미 인식하기(다른 대안 찾지 못한 이상 현재 결혼 유지하려 함. 그 방법으로 아이가 주는 삶의 기대감, 남편이 자신을 위해주는 진실함과 북한남성보다 덜

봉건적인 태도 및 아내를 존중하는 말투 등).

- 그 외 운명으로 체념하기,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할 뿐 안정감과 삶의 가치가 없는 하루살이 인생, 되돌아갈 수 없는 두려움 등.

○ 한편 탈북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북한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문제가 주요 실태조사와 연구의 대상으로 부상. 또한 어떤 현상을 인신매매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됨.

- 2000년 초기 보고서들은 북한여성들의 강제결혼, 혹은 매춘 등을 강조하며 인신매매 사례 강조. 그리고 대표적으로 미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는 북한주민들이 강제노동과 성착취를 목적으로 매매되는 원천국으로 규정하고, 북한당국이 인신매매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인신매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⁷⁾

- 그러나 탈북여성 인신매매 조사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며,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연구 진행됨. 대표적으로 이금순은 착취(exploitation) 개념을 중심으로 인신매매⁸⁾ 실태를 연구하면서, 그 양태 및 변화에 주목하면서 북한주민의 인신매매 실태는 시기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이금순 2005).

○ 그 양태 변화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전문 도강안내인들이 인신매매에 관여하는 경우, 조직적으로 매매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조직 발생, 중국에서 북한여성을 사는 남성들, 강제결혼, 자발적인 결혼, 매춘⁹⁾, 장기절제 및 밀매 등으로 구분하

7) US Department of State, The Trafficking in Persons, June 2005.

8) 인신매매는 “위협 혹은 폭력이나 기타의 강제력, 납치, 사기, 유인,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 활용,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금전 혹은 혜택을 주고받는 행위 등에 의해 ‘착취’의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이전, 은신, 접수하는 행위”라는 정의에 따라, 착취는 “매춘 및 성적 착취, 강제노동 및 서비스, 노예상태에 준하는 행태 및 노예제, 장기절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인신매매가 밀입국매매와 다른 점은 불법적인 국경이동 주선 후에도 지속적인 착취가 이루어진다는 점 Norma Kang Muico, “An Absence of Choice: The Sexual Exploitation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 Anti-Slavery International, 2005.

9) 탈북여성 대부분이 결혼 형태로 거래되나, 일부 젊은 여성들은 노래방, 주점 등 유흥업소로 인계되어 매춘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그리고 불안정한 신분으로 업주들이 협박할 경우, 매춘에 참여하게 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성병에 걸려 고통받기도 한다. 또한 이 과

여 인신매매 실태를 서술하면서, 미국의 보고서는 이러한 실태와 특히 북한의 처벌실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임순희 외 북한인권백서 2006, 240-244).

- 탈북여성의 인신매매 관련 기존 뉴스 및 보고서들은 여성들의 강제결혼 또는 매춘 등을 부각시키며 그 처참한 실상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함. 그러나 탈북자 인신매매 실태는 시기에 따라 크게 변화됨.
- 북한에서 활동하는 전문도강 안내인들이 인신매매에 관여하는 경우: 이들은 주로 장마당이나 역전에서 만난 젊고 외모가 좋은 여자들에게 접근하여 생존과 가족지원을 매개로 유인. 식량난 악화시기인 97-98년 등에 강력한 유인요인으로 작용. 이 시기 북한주민들이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빈번했음(따라서 희생자 논리로만 인식할 순 없는 문제).
- 탈북자 규모 증대하면서, 이들을 조직적으로 매매하여 이익을 챙기는 조직들 발생: 조직적 인신매매단에 의해 몇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짐. 1단계 북한에서 여자를 모아 넘기는 사람과 중국 국경 강변에서 인계받는 자, 그리고 일정 장소에서 북한여성들을 은신시키고 거래를 주선하는 자 등이 관여하며, 단계별로 거래비는 상승. 이 경우 납치 및 강간 등 폭력적이고 조직적인 여성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대개 국경에서 거리가 먼 중국 동북 3성 내지로 까지 거래됨. 대부분 여성이나, 남성들의 경우 노동력이 귀한 오지마을로 거래되기도 함.
-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부각되면서, 중국당국의 대대적인 단속 실시. 이로 인해 2005년 전후로 조직적인 인신매매는 크게 근절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탈북자의 중국체류 장기화 과정에서 탈북자들이 인신매매에 관여하게 됨. 예, 인신매매에 관련된 조선족 등 중국남성과 동거하는 북한여성이 다른 북한여성들을 다른 중국인에게 넘기거나,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금전적 보상을 챙기기도 함.

정에서 매춘 종사 여성이 증대하는 데, 특히 노래방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이금순 2005, 64).

<보충참고 자료, 2004년~2006년 재중 탈북자 관련 ‘좋은벗들’ 실태조사 사례들>

○ 2004년 중국 두만강변 마을에서의 북한 꽃제비

두만강변의 어느 지역에서는 북한 난민 꽃제비들이 빈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잦다고 함. 관할 공간에서는 이 꽃제비들을 골치 아파하고 있음. 아이들은 낮에는 산에 숨어 있다가 밤에 내려와서 활동한다고 함.

○ 2004년 중국 흑룡강성에서의 북한 여성 살인사건

흑룡강의 어느 지역에서는 북한 여성이 살해되어 암매장당한 사건이 발생. 한족에게 팔려와 매를 심하게 맞고 폐결핵 등 심각한 질병에 걸린 이 여성이 새로 팔려간 집에서 인신매매 중개자에게 되돌려 보내지자, 그 중개자가 다시 팔수도 없고 병을 치료하기도 어려워 연변까지 끌고 가 어느 산에 암매장했다고 함.

○ 2004년 중국 길림성 장백현에서의 북한 여성 인신 매매

장백 지역의 인신 매매가는 싼 편이나 연길 지역은 비싼 편이라고 함. 장백에서는 2,000 위안에 여성이 거래되고 있고, 연길에서는 4,500-5,000 위안에 샀다가 다른 지역까지 연계해주면서 6,000-6,500위안을 받는다고 함. 흑룡강의 한 마을에서 만난 여성은 14,000위안에 팔려왔다고 증언.

○ 2004년 7월 중국의 국경 통제

중국의 국경 단속 강화 중국의 국경 수비대가 인민해방군으로 대체되고 증원되었다고는 해도 피부로 체감하기는 어려웠는데 올 6월 중순경 약 한달 동안 중국 국경변의 검사가 매우 심하였음. 특히 국경변을 다니는 택시들은 국경수비대의 검사를 집중적으로 받았음.

○ 2004년 8월 중국에서 면담한 북한 여성 난민들

용정 거주 여성(34세) 이 여성은 중국에 건너 온지 6개월이 되었으나, 바깥출입을 단 한 번도 못하였다고 함. 청진 출신의 이 여성은 한국의 친척 찾아주는 일을 하다가 걸려 도피한 것이라고 함. 남편과 자녀는 아직 조선에 거주하며 가끔

남편이 건너오기도 한다고 함. 한국에 오려고 준비 중임. ? 연길 거주 할머니 한국 사람이 도와주다가 지금은 어느 교회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주변에 한국으로 가려했던 북한 난민들이 많았으나 모두 붙잡혀 나가고 현재 할머니 혼자 남겨진 상태임. ? 연길 거주 여성(23세) 이 여성은 흑룡강쪽에서 거주하다가 한국행을 모색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해 연길로 돌아왔다고 함. ? 연길 거주 여성(48세) 연길 시장에서 일하면서 한 달 1천 위안 정도의 수입을 벌어들인다고 함. 노무시장(인력시장)에서 일당제로 일을 한다고 함.

○ 2004년 9월 중국의 북한난민 소식

중국인과 결혼하여 가족의 보호아래 있더라도 단속에 걸릴 경우 강제송환 조치되고 있음. 특히 기획망명 사건이 터지면 집중적으로 단속 됨. 길림성의 어느 마을에서는 북한 여성 28명이 머물고 있었으나 중국 공안의 단속으로 12명은 잡혀가고 나머지는 도피했다고 함. 자녀가 있어도 단속에서 제외되지 않음. 흑룡강 지역의 어느 마을에서도 10여 명 살고 있었으나 집중단속기간에 모두 잡혀 갔음. 이번 북한 난민 468명 남한 대거 입국 사건 당시에는 이전에 난민 문제로 조사 받은 적이 있는 조선족들이 모두 불러가 조사를 받았다고 함. 한 차례 집중 수사가 있어 9명이 연행되고 이 중 4명이 연루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함.

○ 2004년 9월 중국 연변 소식

중국의 국경변 연변 안도현의 이도백하와 만보진의 민속촌 등 중국 지역에 북한 식당들이 진출하였음. (* 왕래인파가 거의 없고 거주 인구가 적어 식당운영 수지가 맞지 않은 곳까지 북한 식당들이 개업한 것은 북한 당국 차원에서 정보 수집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함)

○ 2004년 중국 장백현과 북한 혜산의 밀수

밀수 길림성 장백현 지역의 밀수품목은 위연에서 들어온 염소, 개 등 가축과 혜산에서 들어온 동이나 니켈, 코발트 등의 철광석 등이 거래되고 있음.

○ 2005년 10월 중국의 호구조사, 중국 요녕성

2006년 12월까지 호구조사, 중국 요녕성은 요녕성장 명의로 2006년 12월까지 호구가 없는 사람들을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 곳 주민들은 2008년 올림픽을 대비해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인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길림성에는 아직 공식적인 지시가 없다. 북경은 현재 신분증이 없으면 들어가기 아주 어렵다. 내국인들도 북경에 온 목적이 뭐냐, 거주지가 어디냐는 등을 물어봐서 확실하지 않으면 돌려보낸다.

○ 2006년 8월 중국 요녕성 지역, 족집게식 난민수색 잇따라

2006년 6월 중순경부터 요녕성 지역 심양 근처의 주변 도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난민 수색과 체포가 잇따르고 있다. 혼인 관계로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의 북한 사람들을 중국 공안에서 대부분 파악하고 있어,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족집게처럼 잡아들이고 있다. 후루도(胡虜島)의 한 공안에 의하면 심양 쪽에서 5월 중에 360-380여 명이 잡혔고, 후루도에서는 300여 명이 붙잡힌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를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최근 들어 결혼한 북한 여성들끼리 서로 소개비를 받고 팔아넘기면서 결혼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먼저 결혼했던 한쪽 남편과의 가정이 해체되는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세계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V. 북측의 탈북자 처벌과 이주의 성격 변화

1. 탈북자 처벌 시기별 변화

○ 북한당국의 ‘탈북자 송환 조치’에 관한 대부분 보고는 주로 인권실태와 관련하여 북한체제의 비인권성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보고되었음. 그러나 북측은 탈북자 처벌을 시기별로 다르게 조치하였음(임순희 외 북한인권백서, 255-260).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대응양상도 다양했고, 체제유지를 위해 그 성격도 다르게 규정하기도 하며, 집단탈북 및 체제 저항탈북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음.

- 1995년 이전: 초기에는 정치범으로 간주하여 정치범수용소에 특별관리, 가족들을 통제구역으로 강제이주 조치.

- 1995년~1998년: 탈북자 수 증가. 이에 따라 97년 9월 27일 이후 보위부 및 사회안전원 집결소에서 관리하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27 구호소(꽃재비 수용소)'에서 일정기간 수용 후 석방하는 등 처벌 완화. 국경이동 탈북자 본인만 반역죄를 적용하며, 가족에겐 적용 안하고 정치범수용소로는 보내지 않음. 그러나 오지로 추방하여 통제하는 조치와 마을 내 비판받거나 따돌림 당하는 등의 정신적 고통 존재.

- 1998년 이후: 98년 이후 탈북자 급격한 증대와 사회질서 이완 등으로 처벌 현저히 약화. 더욱이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가 국제사회에 부각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짐. 이전과 달리 거주지에 상관없이 송환되면 보위부에서 수감하고 조사. 조사 후 밀수 및 단순월경자는 인민보안성이 취조하여 도 집결소에서 강제노동. 한편 한국인·교회·외국인과 관련 있는 정치범 혐의자는 ‘보위부대상’으로 분류되어 조사받다가 관리소나 교화소로 이송됨.

98년 2·13조치 이후 식량 구하기 위해 탈북한 주민들은 출신지역별로 분류하여 국경지역 주민들은 가볍게 처벌하고, 황해도 등 내륙지방 주민들은 조국 배신자로 규정하여 정치범으로 처벌. 이와 함께 그 가족에 대한 처벌이 대폭 완화됨.

헌법에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배반죄(구헌법 제86조)를 삭제하는 등 급증하

는 탈북사태에 대응하여 처벌 완화. 또한 탈북자 개인의 출신지역, 성분, 연령, 탈북기간, 체류지역 등에 따라 처벌 달리함.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의 화해 무드 이후 처벌이 완화됨.

○ 2003년 들어 거듭된 흉작과 핵문제로 불거진 해외 원조 중단으로 주민들의 생활형편이 악화되자 탈북이 다시 증대. 그러나 2002년 기획망명의 후과와 2002년 10월 다시 불거진 북핵문제(제2차 북핵사태)로 인한 국제적 갈등으로 북한당이 탈북 행렬을 막기 위해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⁰⁾

- 단순 탈북이나 한국행을 시도하지 않은 탈북자들에게 적용되던 3-6개월의 노동교양(강제노동)제도를 없애고, 처음부터 교화소(교도소)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냄으로써 종전의 ‘관대 정책’을 전면 수정했다는 것. 이와 함께 행불자에 대한 전국적 조사 시작.

- 또한 과거 중국공안은 어떤 경우에도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북한에 넘겨주지 않았지만, 해외공관 진입을 통한 기획망명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체포되는 탈북자나 제3국으로 탈출하려다 잡힌 탈북자들의 조사자료는 거의 북한에 넘겼다고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3월 재중 탈북자 집중수색과 강제소환을 강화했으나 처벌은 심하지 않았음(임순희 외 북한인권백서, 258).

○ 그러나 2004년 7월 동남아체류 탈북자 국내 집단입국 이후, 이례적으로 강경하게 대응. 미국의 사주에 의한 조직적 유인 및 납치라고 비난하며 이들의 송환 촉구. 또한 미국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 연계에 대한 우려.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반응은 다음과 같음.

- 탈북자 468명의 남한행에 대해 북한의 반응은 차가웠다. 7월 24-26일 금강산에서 열린 8·15남북공동행사 실무접촉에서 북측은 이 문제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북쪽 실무접촉 단장은 26일 아침 남쪽 협상 대표단 숙소인 금강산호텔로 찾아와 “어떻게 수백명을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있나, 이는 우

10) 『조선일보』, 2003년 1월 8일자.

리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중단하지 않으면 일체의 북남관계는 6·15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상급(장관급) 회담도 없다. 당국에 전하라”고 말했다고 남쪽 협상 대표단의 한 관계자가 27일 전했다. 북쪽은 미국 하원의 북한인권법안 통과 직후 벌어진 사태를 남쪽의 ‘도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고 한다.¹¹⁾

- 더 나아가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체제를 허물어보려는 최대의 적대 행위” 혹은 “반민족적 범죄 행위”라고 반발하며 8월3일부터 6일까지 개최하기로 합의했던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무산시켰다. 북한이 당시 탈북자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에 남쪽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도 있었다.¹²⁾
- 북한은 탈북자 집단입국을 명분으로 8월 3일 개최 예정이던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무산시켰다. 그리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화해협의회, 조선인권연구협회를 통해 ‘남조선당국자와 사이비 인권단체들’이 미국의 사주에 의해 탈북자들을 조직적으로 유인 납치하였다며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대응은 주요인사가 아닌 일반탈북자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던 전례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 이와 같은 북측의 강경한 대응은 집단입국이 남한 정부가 제공한 특별기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적극적 수용으로 전환’ 또는 ‘대량 탈북의 전조’로 평가되는 것에 대한 경고로 판단된다. 더욱이 7월 21일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안과 탈북자 문제가 연계될 수 있다는 우려와 북한이 유엔차원의 대북통합지원(Consolidated Appeal Process)에 대해서도 거부사를 밝힌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¹³⁾
- 한편 7월 동남아 국가에서 집단 입국한 탈북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북한 당국은 돌연 태도를 바꿔 탈북자들의 귀환을 호소했다. 북한은 18일부터 이

11) 『한겨레』, 2004년 7월 28일자.

12) 『한겨레』, 2004년 8월 7일자.

13) 이금순, “대규모 탈북자 입국과 남북한 문제”, 『정세와 정책』 2004년 9월호, 성남: 세종연구소, p.6.

를 간 방송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명의의 ‘남조선에 끌려간 동포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탈북자들의 처지를 이해한다며 귀환할 경우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국전선은 이 편지에서 탈북자들을 “몇 푼의 돈이라도 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국경을 넘었던 당신들”로 표현했다. 또 “당신들은 이국(異國) 땅을 방황했던 고달픈 나날에서 돈과 물건을 주면서 남조선에 가면 팔자를 고칠 것처럼 유혹하는 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암흑의 세상으로 끌려갔다”고 동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어서 “사랑하는 공화국과 그리운 고향의 품으로 집단적으로 와도 좋고 개별적으로 와도 좋다. 누구든지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영해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해서 이 편지를 방송한 것으로 분석했다.¹⁴⁾

- 이러한 대응을 살펴볼 때, 북한 당국 역시 체제유지와 관련된 탈북 및 탈북자 실태를 인정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미국 북한인권법 제정과 함께 2004년 10월~2005년 2월 8일까지 탈북자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였고, 남한입국 북한주민 가족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짐. 일반적 도강행위에 대한 정치적 처벌이 크게 완화된 반면, 한국행을 시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정치범으로 처벌 지속.
- 한편 2004년 집단입국 사건을 둘러싼 한국 내 시각 상이함. 이 시각이 재중 탈북자에 대한 한국 내 양대 시각대립을 보여줌.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사와 조선일보의 기사 및 사설을 통해 검토.
 - 먼저 한겨레신문사 측의 시각을 살펴보자. 문제의 동남아 국가에는 최근 4-5년 사이 꾸준히 탈북자들이 몰려 난민 집단을 형성했다. 이들이 이곳에 모이는 과정에서 중국의 브로커들이 개입해 탈출비를 챙기는 이른바 ‘탈북장사’도 성행했으며, 더욱이 이들은 국경까지 탈북자를 안내한 후 그 뒷일은 책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탈북자들은 또 다른 인접국으로 가기 위해 국경지대 밀림에서 바나나를 따먹으며 목숨을 건 여정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14) 『조선일보』, 2004년 8월 20일자.

대해 국내 탈북지원단체들과 국제인권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일부 탈북자들은 자살 소동이나 범죄를 일으켜 현지 당국의 신경을 건드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탈북지원단체의 압력이 거세지자 남한 정부는 2004년 5월 말부터 본격적인 송환 교섭에 나섰다.¹⁵⁾

외교 당국자는 이 과정에서 국제회의 등을 계기로 세 차례 정도 해당국 당국자와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해당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북한에 지원할 쌀도 이곳에서 구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런 처리 방식은 국군포로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들어온 탈북자들에 한해 한국 송환을 추진한다는 그동안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었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워낙 규모가 커 그대로 둘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예방 차원에서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간 교섭에 의해 탈북자 입국을 허용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 후유증을 예고했다. 또한 이는 유엔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남한 정부가 기권한 것과는 모순되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당장 동남아의 다른 나라들에 있는 탈북자들의 처리에서 형평 문제가 제기되거나 중국내 탈북자들의 동남아행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측되었다.¹⁶⁾

- 다음으로 조선일보 측의 시각을 살펴보자. 동남아 국가들이 탈북자들에게 비교적 수월하게 한국행을 허용하고 있어 이 코스가 많이 이용돼 왔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가 심각해지자 동남아 국가들에도 탈북자들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으며 이번에도 해당 국가에서 우리 정부에 탈북자들을 빨리 데려가라고 재촉했다고 한다. 이번 일은 우리 정부의 탈북자 대책이 이제 한계에 왔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탈북자들의 한국행이나 제3국 정착을 탈북자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놓아두고 문제가 불거지면 그때그때 정부가 개입해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을 떠도는 수십만 탈북자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들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까지 우려하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¹⁷⁾

15) 『한겨레』, 2004년 7월 24일자.

16) 『한겨레』, 2004년 7월 24일자.

17) 『조선일보』, 2004년 7월 26일자 사설.

미국은 며칠 전 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에서 “북한 난민의 정착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은 당연히 한국 정부에 있지만 난민들의 고통에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데는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은 북한난민 지원을 위해 미국 정부가 매년 2000만달러(약 236억원)까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조치까지 담고 있다. 한국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미국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말이니 우리로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 법이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니 이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헛갈릴 지경이다.¹⁸⁾

- 같은 사건을 평가하면서 한겨레 측은 정부의 고충과 노력을 심분 설명하며,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함께 향후 전개될 외교적 문제를 우려. 반면에 조선일보 측은 정부의 능력 대책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이 사건과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연계시켜 여당 비판.

2. 탈북의 유형 및 성격 변화: 생존전략에서 발전전략으로

- 식량난 초기인 1995년 이전에는 중국행 탈북동기로 첫째, 성분 불량, 문책, 지위 하락 등으로 체제불만이 팽배한 경우, 둘째, 식량난으로 배고픔에 시달려 탈출한 경우, 셋째, 범법자로서 북한체제로부터 극한 피해를 당한 경우 등 세 가지로 분류. 발생배경으로 사회주의권 붕괴와 중국의 개혁·개방,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 유입, 경제난 심화, 가치관 변화, 통제강화에 대한 반발 등이 지적됨(김병로 1994).
- 생존전략: 식량난 절정기인 ‘고난의 행군시기’를 경유하며 탈북의 유형 및 성격 드러남. 초창기 탈북의 직접적 원인이 식량난이었으나, 탈북 이후 진로 고민이 변화를 보임. 1998년을 기점으로 식량을 구하더라도 북한의 식량사정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 증대. 그러므로 탈북자들은 단순 식량조

18) 『조선일보』, 2004년 7월 26일자 사설.

달이 아닌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국경을 넘은 것으로, 탈북목적은 가족을 위해 식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윤여상 1998).

- 생존전략과 발전전략 혼재: 외부 지원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완화되더라도, 북한의 본격적 경제성장 이전까지는 생존을 위한 탈북과 보다 나은 생활을 찾아 탈북'하는 경우가 혼재하여 지속적으로 발생. 또한 초기에는 해외경험자나 국경지역 주민들의 제한적 탈북이 대부분이었으나, 여전히 국경지역 중심이기는 하나 점차 탈북현상이 전 지역 주민으로 확대되는 현상. 그리고 가족단위의 집단탈북 현상이 발생 및 증대, 여성 탈북자의 증가, 식량난으로 부모를 잃거나 가족해체로 인한 어린이의 탈북 증가(이금순 1999; 김태현·노치영 2003, 서운환 2004, 윤여상 2004).
- 한편 실태위주 보고 및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탈북의 주동기인 '식량난 발생 원인' 규명을 통한 문제해결 및 대응 강조. 예를 들어, '복합유민' 개념제기. 복합유민 사태란 정치적 요소와 환경변화 등 복합적 작용에 의해 발생. 인구과잉, 사회혼란, 경제난 등 자국 내 문제들에 대처할 능력을 상실한 저개발국 정치권력층이 국민들의 생명과 복지보다는 정권유지에 급급하여 자연현상에 의한 단순유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 이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단순 유민사태 일지라도, 정부의 대응능력 및 의지결여 즉, 정치적 요소에 의해 그 결과가 악화됨. 북한주민의 탈북동기에도 이러한 정치적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식량난, 환경적 요소 등에 의한 환경난민의 논의와 더불어 인간안보 개념을 활용하여 재중 탈북자 문제 접근하기도 함(이신화 2001).
- 2004년 6월 말 현재 통일부에서 국내입국 탈북자를 대상한 탈북동기 조사를 통해 탈북의 유형 및 성격 보고(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 탈북동기별 현황, 2004.6월 말 현재).

구분	생활고	처벌 우려	체제 불만	동반 탈북	중국 정착	가정 불화	기타	계
'00	127	66	52	51	13	2	1	312
'01	293	73	33	171	7	2	4	583
'02	606	93	96	259	37	39	9	1,139
'03	774	80	123	194	46	53	11	1,281
'04.6	463	44	63	148	2	39	1	760
계	2,263 (55.53%)	356 (8.74%)	367 (9.01%)	823 (20.2%)	105 (2.58%)	135 (3.31%)	26 (0.64%)	4,075 (100%)

- 2005년 전후로 탈북자 발생원인에 대해 첫째, 일시적으로 식량이나 약, 돈을 구하고 돌아가기 위한 단기 경제적 동기, 둘째, 북한에서 더 이상 생계유지가 어려워 중국에서 살고자 하는 장기 생계적 동기, 셋째, 북한체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떠난 정치적 동기, 넷째, 북한에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해서 탈출한 인권적 동기, 다섯째, 먼저 떠난 탈북자가 남은 가족을 데리고 나오는 복합적 동기로 구분(좋은벗들 2005).
 - 그 외 탈북목적에 대해 단순 식량위기에 따른 절박한 상황의 탈출구,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경제적 이유, 정치적 이유로 구분(곽해룡 2005).
 - 또한 주요 탈북요인들을 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 권리라는 인권적 관점에서 북한 내 인권실태 변화와의 연계 속에서 고찰 및 구분하기도 함(김수암 2005).

- 발전전략: 주목할 시각으로 세계화와 아시아 지역 이주성격과 동질성을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 대표적으로 탈북자를 이주자로 규정하면서 2000년대 이후 최근의 이주 원인은 기근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 취업이나 전문기술 및 장사목적의 탈북 급증 주목(김정아 2005; 노옥재 2005).
 - 여전히 생계형이지만 '삶의 질과 관련된 생계형 이주'가 주를 이룬다는 것. 기근을 피해 양식을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좀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
 - 내부에서 일자리를 찾기 힘든 계층으로 막연한 정보에 따라 이주하기 때문에

인신매매 등의 위험에 노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계절형 (농업) 노동자도 등장, 가족들이 연쇄적으로 이주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됨.

- 북측의 경제적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식량 부족 해결보다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주노동자’라는 것.
- 전체적으로 생존목적의 탈북은 감소추세이고 전문기술 및 장사목적의 월경이 급증하고 탈북성격의 변화 평가. 위에서 보듯이 경제적 측면에 주목하더라도 탈북동기가 단순 생계형에서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탈북의 유형 및 성격 변화 관련 주목할 점으로 외부정보 유통과 상대적 박탈감 심화, 중국과 한국의 발전상에 대한 인식 확산, 재탈북자 증대, 더 나은 삶을 향한 발전전략으로서 탈북.

-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왕래하면서 중국 내 체류경험이 주요한 탈북촉진 역할.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발전상과 체제 현실 인식 등.
- 외부정보 유입의 증가와 상대적 박탈감 심화로 국경이동에 대한 욕구 증가. 장마당에서 장사과정에서 여러 정보 유통, 장사를 위한 지역이동을 통해서도 여러 정보 교환 및 순환.
- 한국 드라마 비디오 및 위성방송 수신. 특히 드라마 영향이 큼. 한국의 발전상에 대한 인식과 관심 및 기대 증대.
- 남한 입국 가족이 중국 친척이나 중개인 통해 국경지역 거주 가족들에게 무선전화 공급. 이들 가족이 중국이나 남한 가족과 직접 통화하면서, 실시간 정보를 주고 받음. 이렇듯 다양한 경로 통해 외부 정보 유입하고 상대적 박탈감 심화. 이로 인해 탈북 결심.
- 재탈북자 증대: 탈북하여 중국 등에서 생활하면서 상대적으로 나은 생활 경험과 북한 내 위생·영양 상태 열악 재확인과 탈북자에 대한 처벌 및 편견 등으로 북한 사회 내에 다시 적응하기 어려움.
-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 중국에서 돈을 벌어 장사밀천 마련 후 귀환하거나, 중국 내 취업하여 북한 내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하기 위해 탈북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그 과정에서 물질적 거래가 이루어지며, 점차적으로 전문화 조직화되고 있었음.

- 재중 탈북자 유출요인과 유입요인을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음.

유출요인 (push factor from North Korea)	유입요인 (pull factor to Ch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난 · 소외된 적대계층 · 외부세계 정보유입 · 상대적 박탈감 심화 ·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 · 범죄에 대한 처벌 위협성 · 탈북자 처벌과 편견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경제적 요인) · 산업화 과정에서 중국 농촌노동력 부족과 수요.¹⁹⁾ · 취업기회 및 여성수요 증대. · 조선족 사회 및 민간단체 지원. · 중국과 남한의 지리적 요인. · 조선족과 외부 친척 등을 매개한 사회연결망 요인. · 남한의 탈북입국자에 대한 정책적 요인.

- 이주유형은 식량 및 금품 구한 후 바로 귀환하는 귀환이주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개인 욕구충족을 위해 중국 및 러시아 내에서 이동하는 순환이주와 남한 및 제3국으로 이동하는 단계이주로 변화. 지리적 확산속도는 더디지만 점차 내륙 전 지역으로 확대, 조선족 거주하는 연변자치주 중심으로 동북3성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나, 신변상 안전을 위해 점차 북상했음. 이들의 이주 루트는 크게 2가지 첫째, 중국과 러시아 루트, 둘째, 몽골 루트와 태국 또는 베트남 등 동남아 루트. 이중 후자는 망명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음(문남철 2004; 이금순 2005).

V. 맺는 말

- 재중 탈북자 문제 관련해서 아직까지 쟁점이 되는 사안들은 첫째, 송환 후 처벌 문제를 둘러싼 탈북자의 성격과 국제법적 지위(난민 개념 적용과 지위 및 권리 문제), 둘째, 재중 탈북자들이 희망하는 진로의 다양성 문제, 셋째, 기획탈북 및 기획입국 문제, 넷째, 재중 체류 시간과 경험에 따른 국내입국자들의 차이 문제, 다섯째, 탈북 및 입국 과정에서 브로커들의 문제, 여섯째, 여성과 어린이 탈북자 증대와 이들의 인권침해 실태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19) 특히 두만강 연안의 양 지역은 중국의 수확기에 부족한 노동력 보충위해 북한주민의 계절적 인구이동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지역.

-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문제해결 방안 등이 제기되었는데, 대표적인 난민지위 관련한 대립적 견해와 그에 따른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음(곽해룡 2002; 정주신 2006).
 - 국제적으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난민지위 부여는 어려움. 탈북자 모두를 정치적 규정력이 강한 난민이라 보기 힘든 상황. 그러므로 실질적 대안 : ① 북한 식량난과 경제위기 해소 할 수 있도록 농업개발 및 남북경협 지원 통해 탈북자 발생 감소 유도. ② 강제송환 처벌 약화하도록 대북지원과 연계하여 자발적 귀환 유도. ③ 국내외 인도적 지원단체 및 민간단체 내 네트워크 형성과 탈북자 지원 중심센터 마련. ④ 민간단체와 정부 긴밀한 지원 및 협조 체제구축. ⑤ 환자들과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인도주의적 지원체계 별도 구축. ⑥ 정치적 난민과 경제적 탈북자 구분하기 위한 기준 마련과 중국정부가 구별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 및 견인. ⑦ 대 중국 협상력 높이기 위한 관련단체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등(곽해룡 2002).
 -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처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이들이 국제법상의 난민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 그러나 현행 국제법 질서 하에서 탈북자가 난민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일차적으로 탈북자 집결지이자 해당국인 중국에 있음. 이 점에서 탈북자의 지위여부에 난관. 그러므로 재중 탈북자 문제 해결의 기초는 북한체제 내에서 식량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스스로 탈북사태를 방지하는 것. 그러나 이것이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기에 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해 난민으로 보지 않으려는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관건(정주신 2006, 267).

- 한편 탈북여성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첫째, 외교적 마찰 등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울 경우 국내외 NGO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중국 조선족을 지원해 이들을 통한 탈북여성 지원. 중국도 국제적 위상에 강해지고 올림픽 개최등으로 인권문제 등에 민감한 만큼 정부가 국제기구 및 국제 비정부단체들과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봄. 둘째, 난민지위 확보와 강제송환 중단 노력, 셋째, 북한의 탈북자 처벌중단을 위한 국제적 여론 형성, 넷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다섯째, 인신매매 근

절 및 결혼의 합법성 인정, 여섯째, 임시보호시설 지원, 일곱째, 국내·외 여성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연계활동 강화(백영옥 2002, 256-257) 등이 제기됨.

○ 그리고 재중 탈북자 문제를 접근하는 데 향후 조사 및 연구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기됨(김수암 2006).

- 첫째, 사안별, 집단별 구체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연구대상을 세분화·전문화할 필요.
- 둘째, 구체적인 사안별·실태별로 나타나고 있는 변화양태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적해나가야 할 것. 특히 탈북 동기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필요.²⁰⁾ 그리고 탈북자 중국 체류지역 및 생활상 변화양상에 대한 지속적 분석 필요.
- 셋째, 탈북 동기와 관련하여 배출요인으로서의 북한사회 전체에 대한 분석, 유인요인으로서의 외부요인의 전체 모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수행할 필요.²¹⁾
- 넷째, 탈북 동기의 변화 속에서 탈북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국제적인 일반적 현상과의 비교분석의 방법을 적용 및 활용해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 또한 장사 등으로 수시로 국경을 이동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탈북자의 성격과 규모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엄밀하게 규정될 필요.²²⁾ 그리고 초창기와 달리 탈북성격의 변화 속에서 조선족 사회 및 중국사회와의 관계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 조사 필요.

20) 대부분의 연구자가 '보다 좋은 환경을 위해' 탈북한다는 동기의 변화를 들고 있는데, 그 내용 및 개념상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각기 제시되고 있는 각 동기별 비중의 변화도 지속적으로 추적해나가야 할 것이다. 탈북 동기에서 배출요인과 유인요인의 여러 가지 요인 중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1) 이러한 배출·유인의 전체적인 모습을 바탕으로 탈북 요인과 규모 등을 분석·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배출요인과 관련하여 법·제도의 개편과 법의 실행 등 북한당국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해나가야 할 것이다.

22) 또한 탈북자의 규모는 탈북자들의 체류 형태에 대한 분석과 연계 속에서 추이를 분석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주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국제적 사례연구를 통해 탈북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학술적으로 재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 다섯째, 탈북자가 국내적응을 위한 모집단이라는 점에서 해외체류 상의 문제와 국내정착 과정에서의 연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해나갈 필요 있음. 탈북 단계, 중국 체류 단계, 제3국 경유 단계, 국내입국과정 등 단계별 실태 파악은 물론 전 과정을 포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필요.

참고문헌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곽해룡, “재중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제19집(서울: 한국세계지역학회, 2002).

곽해룡,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 신 이산가족 현상의 발생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000년 상반기호 통권 제33호.

곽해룡,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 (한국학술정보, 2005).

김명기, “재외탈북자는 누가 보호해야 하는가: 재외탈북자에 대한 법적 보호 의무,” 북한인권시민연합 제1회 학술회의 자료집, 1997.

김병로,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1994-11, 1994.

김수암, “해외 체류 탈북자 문제 쟁점과 과제,” 북한연구학회, 『2006년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2006.

김수암, 『북한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통일연구원, 2005).

김일수, “거주이전의 자유와 북한의 국외탈출죄,” 북한인권시민연합 제8회 학술토론회 자료집, 1998.

김정아, “북 출신 이주자, 그들은 누구이며 무엇이 문제인가?” 다산인권센터·사회진보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전북평화인권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 북한인권 워크숍, 『‘북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 2005.11.30.

김태현·노치영, 『재중(在中)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13인의 탈북체험(Lived Experiences)을 중심으로』 (서울: 하우, 2003).

문남철,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요인과 이주패턴 및 이주경로,” 『지리학연구』제38권 4호(서울: 국토지리학회, 2004).

문숙재, “북한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중국 연변지역의 탈북 여성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2000.

백영옥, “중국 내 탈북 여성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6권 1호(서울: 북한연구학회, 2002).

서윤환, “재외탈북자의 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 -여성, 어린이를 중심으로,” 북한인권

- 정보센터 워크숍, 2004.6.
- 서일 외, “중국 내 북한 난민 건강실태,” 『통일연구』 제3권 1호, 연세대 통일연구원, 1999.
-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대한 정책대안,” 『국가전략』 제9권 1호, 2003
- 윤여상, “재외탈북자 실태와 지원체계: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현 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제2호, 1998.
- 윤여상, “북한주민의 국내입국과정 분석과 개선방안: 비제도적 입국과정과 전문개입자 역할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 『재외 탈북자 및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하계 북한인권워크숍, 2004)
-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통일연구원, 2005).
- 이금순, 『탈북자문제 해결 방안』(통일연구원, 1999).
- 이금순, “대규모 탈북자 입국과 남북한 문제,” 『정세와 정책』 2004년 9월호, 세종연구소.
- 이신화, “대량 탈북사태에 대한 조기 경보: ‘환경난민’의 개념을 적용하여,” 『국제정치논총』 제38집 2호, 1998.
- 이신화, “탈북자와 인간안보,” 『사상』 제13권 제2호, 2001.
- 임순희 · 이금순 · 김수암 · 최의철, 『북한인권백서 2006』(통일연구원, 2006).
- 정주신, “중국 내 탈북자의 처리문제와 해결방안,” 『한국동북아논총』 제40집, 2006.
- 이영석 · 정유경 엮음, 『국내외 탈북자를 위한 민간지원 어디까지 왔나, 무엇이 쟁점인가?』 (서울: 우양, 2005)
- 노옥재, “국의 탈북자에 관한 민간의 지원: 쟁점과 요구”
 - 곽대중, “국의 탈북자 지원의 현황과 쟁점, 그리고 과제”
 - 윤여상, “재외탈북자에 대한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지원에 관한 제언,”
- 임채완 · 최영관, “중국내 탈북자의 ‘난민적’ 상황과 그 대책: 연변자치주 지역 조사를 중심으로,”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36호, 2001.
- 장복희, “난민의 정의와 인정절차,” 북한인권시민연합, 제9기 북한인권 · 난민문제아카데미자료집, 2004.12.
- 장창준, “‘북한인권법’과 이북인권상황의 실제,” (한국민권연구소, 2004.10).
- 제성호, “해외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향,” 서울 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제9권 1호, 2002.
- 좋은벗들, 『두만강을 넘어온 사람들: 중국 동북부 지역 2,479개 마을 북한 ‘식량난민’ 실태조사』 (정토출판, 1999).

- 좋은벗들, 『북한식량난과 북한인권』, 2004.
- 좋은벗들, “재외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접근방법은 무엇인가』, 2005.3.23.
- 최의철·김수암,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통일연구원, 2005).
- 한국법제연구원, “특집: 대량탈북사태와 법적 대비”, 『법제연구』 제12호, 1997.
-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 학술토론회, 2003.12.
-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정책 포럼, 북한인권법안이 재외탈북자 및 관련국가에 미치는 영향, 2004.12.
- Joel R. Charney,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the Current Situation and Strategies for Protection,” Testimony to the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November 4, 2003.
- Joel R. Charny, Acts of Betrayal: The Challenge of Protecting North Koreans, Refugees International, 2005.
- Norma Kang Muico, “An Absence of Choice: The Sexual Exploitation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 Anti-Slavery International, 2005.
- US State Department of State, The Status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and the USG Policy Toward Them, February 16, 2005.
- http://www.goodfriends.or.kr/n_korea/n_korea6.html?sm=v&p_no=13&b_no=3306&page=3.

재중 탈북자 인권관련 전문가 간담회 자료

탈북자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

서 보 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탈북자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

서 보 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비정부기구의 동향 |
| II. 관련국 동향 | V. 결론: 특징과 전망 |
| III. 유엔의 동향 | |
-
-

I. 서론

탈북자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에는 ①탈북자 실태 및 (탈북자 증언을 통한) 북한인권 상황 파악, ②탈북자 보호, ③북한인권정책을 포함할 수 있음

여기서 국제사회란 탈북자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각국 정부기구와 유엔을 비롯한 정부간(IGOs) 기구, 그리고 국제비정부기구(INGOs)를 말함

아래에서는 이들 세 행위자들의 탈북자 관련 동향을 각각 살펴보고 행위자별 특징과 전망을 도출해보는데 목적이 있음

II. 관련국 동향

1. 미국

1) 행정부

○ 북한인권상황 파악

- 연간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를 통해 북한인권 실태 평가
- 종교의 자유는 종교자유위원회의 별도 보고서 발간

○ 대북압력

- 6자회담, 유엔 인권기구 등을 통해 문제제기

○ 민간단체 지원

- 미 국무부의 재정 지원으로 인권단체 Freedom House가 2005-6년 동안 워싱턴, 서울, 브뤼셀, 로마 등지에서 국제회의를 개최. 이는 미 행정부가 전략적 판단에 의해 북한인권을 직접 제기하지 않는 대신 행정부의 지원 아래 NGO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을 의미
- 또 국무부가 2008 회계연도 예산안에 북한 민주화 지원 명목으로 200만 달러를 책정하였는데, 이 돈이 자유북한방송이나 북한민주화운동단체들의 활동지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

2) 의회와 민간단체의 협력

○ 청문회 개최

- 2003년 6월 5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위원장: 샘 브라운백 의원)는 ‘북한내 주민들의 생활’(Life Inside North Korea)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인권 청문회를 열었는데, 여기는 탈북자들과 함께 미북한인권위원회의 리앙-펜턴(Liang-Fenton) 사무국장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총체적으로 심각하다고 주장

- 2004년 4월 28일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태소위원회(위원장: 제임스 리치 의원)가 연 ‘인권, 난민, 그리고 인도주의적 도전’이라는 제하의 북한 청문회에서 안혁, 김태진, 최동철 등 3명의 탈북자들이 북한 인권 및 탈북자 실태 증언
 - * 탈북자들의 미 의회 증언에는 솔티(S. Scholte) 방위포럼재단 회장이 적극 관여
- 2005년 4월 28일, 하원 국제관계위 아태소위 주최로 열린 청문회에서 주빌리 캠페인의 부왈다(A. Buwalda)는 북한인권법을 환영한다고 전제하고, 미 행 정부에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의 탈북자 난민 지위 부여 노력 지원, 탈북자의 임시적 보호를 위한 다자간 협상을 촉구

○ 북한인권법 제정

- 2004년 3년 23일, 리치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태소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이 제안하고 29명의 공화·민주당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2004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안이 하원에 상정하여 동년 10월 상하 양원 통과,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
- 북한인권법의 특징은 첫째, 북한에 대한 원조를 북한당국의 인권 보호조치와 연계시키고 있으며 둘째, 탈북 유도과 북한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고 셋째, 탈북자 및 탈북지원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담고 있음
- 이 법안 준비, 상정, 제정 등 일련의 과정에서 미국내 북한인권관련 단체와 인사들이 깊이 관여

- 미북한인권위원회는 2006년 12월 7일 발간한 보고서 *The North Korean Refugee Crisis: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sponse*에서, 중국정부의 탈북자정책(단속, 강제송환 등)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중국이 국제적 의무 준수를 호소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49-51)

2. 중국

○ 주권과 소수민족 정책의 연장

- 중국은 탈북자문제를 사회주의적 기준에 의한 주권의 문제이자, 조선족과 연계된 어떠한 분리 민족주의도 배격한다는 입장에서 대하고 있음

○ 중국은 탈북자의 난민인정 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채 불법월경자로 간주하여 ‘변경지역관리 의정서’에 의거해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음.¹⁾ 중국의 논리는 난민협약상의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난민의정서 중 어느 하나에 상대적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탈북자=불법월경자=‘변경지역관리 의정서’에 따른 강제송환이라는 식

○ 탈북자정책의 추이

- 1990년대 상반기에는 법적 규제가 있었으나 동북지방 조선족의 호의적 태도와 적은 규모의 탈북자 및 짧은 체류기간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음
- 그러나 1997년 이후 대량의 탈북자가 중국으로 유입되고 이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하게 되자, 중국정부는 국경방해죄를 형법에 신설하고 탈북자 및 탈북자 은닉자에 대한 벌금부과 및 단속을 강화. 중국정부는 이때부터 ①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 “일시적 유민이자 불법적인 월경자”이며, ②이 문제는 국제적 문제가 아니라 “중국 내부의 문제”이자 “북한과의 양자문제”라고 규정하고, ③중국에 들어온 탈북자 단속 및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을 단행하기 시작하였음.

○ 최근의 변화 징후

- 중국은 최근 탈북자 단속을 하면서도 인도주의적 입장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길수가족 사건에서 보듯이 국제적 쟁점으로 부상된 탈북자에 한하여 제3

1) ‘변경지역관리의정서’에서 북한과 중국은 불법월경자에 대한 명단과 자료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제4조 제2항). 다만 동 의정서는 재해로 인한 월경은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고(제4조 제1항), 적절한 구호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제1조 제1항). 제성호(2002, 58).

국을 통한 한국행을 허용하고 있음. 중국은 탈북자 발생이 북한의 식량난에서 초래하였다고 판단하고 대북 식량지원과 이와 관련된 구호단체의 중국내 인도주의적 활동을 허용하고 있음(이진영 2002, 2-3).

- 또 중국은 탈북자문제를 주권문제, 북한과의 쌍무적 관계로 제한하여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조건적인 강제송환에 따른 국제적 비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음
- 탈북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과 기획망명 등을 시도하는 탈북지원단체에 대한 탄압, 그리고 대북 식량지원 및 탈북자 단속에서의 협조 등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중국내 재외공관에 진입한 탈북자에 대한 제3국행 형식의 추방이 후자에 해당함

- 중국은 탈북자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제4세대 지도부인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등장 이후 주중 한국공관에 진입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탈북자 정책의 가시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
- 이와 관련해 중국은 난민고등판무관실 북경사무소와 대화 용의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 형식적 수준

3. 유럽연합

- 지원과 대화

<표 1> 유럽연합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현황(1995-2004년)

단위: 백만 유로

구분	1995-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인도지원	38.04	3.365	21.025	17.25	16.75	96.43
식량 지원	168.4	24.5	20	8	5	225.9

자료: 최의철(2005: 88)

<표 2> 유럽연합과 북한간 정치·인권대화

구 분	주요 의제
1차 정치대화 (1998.12 브뤼셀)	인권상황, 식량원조, 핵개발문제, 한반도 안보상황, KEDO문제
2차 정치대화 (1999.11 브뤼셀)	연락사무소 개설, WMD확산 방지, 인권개선방안, 농업구조 개혁, 대북지원확대 및 모니터링문제, 남북대화
3차 정치대화 (2000.11 평양)	인권개선, 미사일 등 WMD확산문제, 양측간 관계개선, 경제지원 확대
인권대화 (2001.6.13 브뤼셀)	상호평등 및 주권원칙, 인권원칙, 국제인권기구와 협력
4차 정치대화 (2001.10 평양)	수교이후 양자관계, 남북관계, 인권, WMD문제, 대북지원, 국제 터러에 관한 입장
5차 정치대화 (2002.6 평양)	인권, 탈북자, IAEA 핵사찰문제, 대북지원확대, 외국투자 위한 법률정비
6차 정치대화 (2004.11 평양)	핵문제, 인권문제,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등

출처: 이규영(2003: 45), 최의철(2005, 91-92)

- 유엔 헌장기구를 통한 정치적 압력
 - 제59-61차 인권위, 제60-61차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상정
- 탈북자 수용
 -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북한 국적자 320명이 2004년 현재 서유럽 5개국에서 거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난민고등판무관실의 최근 통계를 인용, “2004년 12월 말 현재 유럽에는 320명의 북한 국적자가 난민 자격을 얻어 살고 있다”며 국가별로 독일(276명), 영국(17명), 네덜란드(15명), 덴마크(7명), 아일랜드(5명) 순이라고 밝힘(연합뉴스, 2006년 3월 10일)

4. 기타

○ 몽고

북한주민에 대한 몽고의 정책은 수도인 울란바토르 지역정치에 영향을 따라 가변적인데, 중앙정부의 통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와 이동 경로를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과 협조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탈북자들은 국경에서 체포되어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짐. 국제 활동가들이 제안한 몽고의 난민수용소는 몽고 외부부와 베이징에 의해 거부당함

○ 태국

태국은 탈북자들을 여타 망명 신청자들처럼 간주하여 지위결정 여부를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의 지역 사무소에 위임하고 있는데, 난민고등판무관 방콕 사무소는 교회단체와 남한 대사관으로부터 북한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받아 세밀한 조사를 실시(Human Rights Watch, 2001)

Ⅲ. 유엔의 동향

1. 현장기구

○ 2005-6년 제60-61차 총회 결의의 우려사항

- 추방 혹은 송환돼 북한으로 귀환한 이탈 주민의 상황과, 외국에서 송환돼 온 주민들이 북한을 떠난 행위를 반역으로 간주해 구금, 고문, 비인간적·굴욕적 대우, 사형 등의 방법으로 처벌하고, 각국에 강제송환 기본원칙의 존중 의무를 상기시키는 것.
- 모든 사람의 국내 이동과 해외 여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 2005년 제61차 인권위원회 결의의 권고사항

- 북한당국에 여성인신매매 금지를 위해 주변국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 국제사회에 관련국들이 탈북자들의 피난처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

2. 조약기구

-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북한이 제출한 제2차 이행보고서를 심의해 2001년 8월 27일 최종견해를 발표
- 사회권위원회는 2003년 11월 10일부터 북한의 제2차 사회권 보고서를 심의하고 11월 28일 최종견해를 채택
- 아동권리협약위원회는 2004년 6월 북한이 제출한 아동권 이행 보고서를 심의하여 최종견해를 채택
-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5년 7월 5일부터 열린 제33회기 중에 북한이 제출한 여성권리 이행 보고서를 심의하여 7월 22일 최종견해를 발표

3. 난민고등판무관실

-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HCR)은 1998년 탈북자의 난민 심사를 3건 다뤄 3명을 난민으로 인정했고, 1999년에는 10건을 다뤄 11명, 2000년에는 26건을 다뤄 32명, 2001년에는 54건을 다뤄 82명, 2002년 5월 15일까지는 61건을 다루어 92명을 난민으로 각각 인정했다. 그러나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이 그들에게 넘겨진 탈북자들 중 한 명이라도 거절했는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음(Human Rights Watch, 2001)
- 탈북자의 난민 지위와 관련하여 난민고등판무관실은 국제보호국(Division of International Protection)이 연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03년 9월에 보고한 바 있는데, 당시 판무관실은 탈북자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집단(person of concerns as a group)”라고 언급한 바 있음

4. 북한인권특별보고관

- 제61차 유엔 인권위에 제출한 보고서(2005. 1. 10)
 - 북한당국은 인민의 이동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국내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위해, 이주 예상자가 당국의 여행증명서를 얻

는 데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은 정치적 제약과 식량위기와 같은 두 가지 이유로 탈북하였는데, 정치적 이유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난 사람들은 전통적인 국제법의 “난민” 정의에 맞을 뿐만 아니라, 식량난으로 탈북한 사람들도 귀환하면 박해받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 또한 난민으로 분류될 수 있음
 - 탈북자들은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대우받아야 하고 비송환원칙 같은 기본적인 국제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탈북자를 불법이주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난민으로 볼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귀환시 북한정부의 박해 여부임
- 한국정부는 북한에서 피난처를 찾아 온 사람들에게 대한 인도주의적 정책을 지속하고,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와 다양한 채용 및 생계수단의 선택권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아울러 그들의 사회적 재화와 재통합을 촉진시킬 것을 장려함(2006. 12. 14-18 방한시 기자회견문)

IV. 국제비정부기구의 동향

1. Amnesty International(2004, 2006 보고서)

1) 탈북자 실태

- 가뭄과 식량난으로부터 도망한 결과: 중국의 탈북자들
 - 북한의 경우 단순히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탈북한 경우에도 정치적 범법행위로 간주
 - 중국의 경우 이들을 난민으로 보지 않고 경제적 이주자로 정의하고, 강제송환하는 조치를 취함
 -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경우 탈북 횟수, 신분, 정치적 위험성 유무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상이함

○ 강제 송환과 처벌 완화

- 북한과 중국간 불법월경자 송환협정에 따라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을 불법월경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강제송환하고, 이들의 국제적 보호 혹은 난민판무관실의 접근을 막고 있고, 2005-6년에 들어 양국은 기획탈북자, 선교사,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탈북자 수가 증가하면서 북한당국은 1999년,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탈북자들을 불법 월경과 귀환 의도를 가진 월경, 혹은 빈번한 월경과 단순 월경을 구별하고, 불법 월경자나 상습적 월경자에게는 최고 2년(1999년은 3년)형을 내린다고 함. 그럼에도 구금된 탈북자들 중 40% 가량이 다시 월경에 나선다고 함(2007)

2) 탈북자 정책

○ 국제사회의 의무

- 식량과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
- 북한정부에 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할 것
- 북한정보와의 모든 대화절차에서 인권보장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킬 것
- 인권의 제반 원칙에 근거하여 개발과 인도적 지원정책을 펴나갈 것
- 공정한 식량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북한정부에 계속해서 촉구할 것
- 중국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하도록 할 것

○ 중국정부의 의무

- 국제 인권법과 난민법에 입각하여 그 의무를 다할 것
- 강압적 처우를 받게 될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지 말 것

○ 한국정부의 의무

- 남한에서 재정착하기를 원하는 중국의 탈북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

2. Human Rights Watch (2002, 2007 보고서)

1) 탈북자 실태

○ 탈출의 결정

-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주된 탈출원인은 배고픔과 극단적인 가난이 원인이었고, 보다 최근에는 개인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섞여 있음

○ 제3자의 도움

- 북한주민들은 중국정부관리나 개인으로부터의 착취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없으며, 인터뷰한 대상자들은 숨어 지내는 동안 이동의 자유, 육체적 자유, 의료지원의 접근, 그리고 법적 조력으로부터 격리된 생활
- 중국정부의 엄격한 통제가 증가되면서 조선족들의 동정은 감소됨. 북한 사람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하는 사람은 북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낮은 임금 혹은 무임금 노동으로 일을 시키기도 함

○ 여성에 대한 성노예와 인신매매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건너는 북한 여성들의 수는 1998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대부분 매춘이나 강제결혼이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성산업에서 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 미래가 없는 아이들

아이들의 이주는 성인과 유사한 요인에 더해서 교육 체제의 근본이 붕괴되고, 식량부족에 의한 북한 지방에서의 장기결석들이 원인

○ 2006년 7월 중순부터 12월 초 사이에 도강(탈북)한 16명의 북한 주민들을 인터뷰한 결과,

- 북한 당국자들은 이미 2004년 말에 초범이라도 1년에서 5년에 이르는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전국적으로 경고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정책변화는 2004년 여름, 남한이 베트남에 있던 북한 난민들을 재정착 목적으로 남한으로 이

송한 이후에 일어남

- 구금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은 나체 수색, 언어 폭력 및 위협, 구타, 강제 노동, 의료 처치의 부족 또는 전무,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음

2) 탈북자 정책

○ 북한 당국의 역할

- 월경한 주민들에 대한 처벌의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투옥, 감금, 강제 노역, 거주 제한, 공식적 차별 또는 이러한 것과 유사한 강제력을 허가한 법, 법령, 규정, 그리고 명령 등을 철폐해야 함
- 제3국으로 떠난 사람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처벌의 집행(연좌제)을 중단해야 함
- 북한으로부터 이주 또는 난민을 돕기 위한 행동과 관련되어 구금된 어떠한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석방하여야 함
- 탈북자들을 체포하는 것을 중단하고 주민들이 북한 안팎으로 이동하는 자유를 허락할 것을 촉구함

○ 국제사회의 역할

- 중국과 쌍무적 인권 대화에 참여하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하는 모든 정부는 북한 탈북자와 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문제를 모든 회담뿐만 아니라 중국정부 국무원 또는 고위관료들과의 외무장관 회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간주하여야 함
- 러시아, 몽고, 베트남, 버마, 캄보디아, 그리고 태국과 같은 북한 이주민의 유입에 영향에 받는 국가들은 수용시설을 허용해야 함
- 북한에 이웃한 국가들은 망명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대한 구금 또는 심각한 고문에 대한 심각한 위협, 부당한 처우, 자의적 구금, 또는 사형의 우려가 있는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여야 함
- 중국내에 대사관, 영사관, 또는 다른 기관이 있는 국가는 망명지를 찾는 북한인들의 탈출에 대해서 그들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과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의 협조를 요청해야 함

- 중국정부의 역할
 - 북한인에 대한 강제적 송환과 같은 국제 인권과 난민보호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어떠한 시도도 즉각 중단하여야 함
 - 북한의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과의 협력을 위한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과의 고위급 회담을 시작해야 함
 - 베이징 내 외교 단지로 진입하는 탈북자들을 지체시키려는 어떤 노력을 중단하고, 외교지역내 있는 북한인들 또는 보호받기를 원하는 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한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의 접촉을 허용해야 함
 - 탈북자들을 일괄적으로 불법적인 경제 이주자로 분류하여 즉결 송환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요구함

- 이밖에 Human Rights Watch는 2006년 9월 14일, Refugees International,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ti-Slavery International,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의 단체와 함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 대표들에게 북한인권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연대청원을 제출

V. 결론: 특징과 전망

- 미국과 유럽연합의 차이

미국과 유럽연합은 북한인권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에 차이를 보이는데, 그것은 인권에 관한 양측의 정책적 비중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음

 - 미국은 인권문제보다는 핵문제 등 안보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은 대외정책 전반에서 인권의 비중을 높이 설정하고 있는바,
 - 이렇게 볼 때 북한은 미국의 압박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에 인권개선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유럽연합과 대화 재개에 나설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입장과 역할
 - 중국은 북한과 같이 상대주의적 인권관을 갖고 있고 국가주권을 인권보다 우

위에 놓고 있는 동시에, 현실적 측면에서 탈북자가 가장 많이 체류하는 국가로서 탈북자 보호 및 정착에 가장 큰 역할을 요청받고 있음

- 중국은 탈북자들이 난민인지 경제 이주자인지를 불문하고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체류기간 동안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한편, 에너지, 식량 지원 등을 통한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유엔의 동향 평가

- 유엔 인권기구는 헌장기구와 조약기구를 양측으로 하고 있는데 두 기구에서 상이한 북한인권 논의는 두 기구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인권위원회와 같은 헌장기구는 북한인권을 자유권 중심으로 다루면서 북한에 인권개선 압력을 가하는 데 비하여, 조약기구에서의 북한인권 논의는 해당 위원회의 전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에 구체적인 개선 권고를 하는 기능적 성격이 강함
- 그에 따라 북한은 총회, 인권위 등 헌장기구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정치적 공세”라고 비난하며 반발하는 한편, 가입한 4개 국제인권규약위원회 등 조약기구에는 보고서 제출 및 심의 참여, 해당 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 존중과 같이 선별적 대응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앞으로 헌장기구에서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이 북한인권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와 관련하여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할 필요성이 제기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과 북한의 접촉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북한이 인권판무관실과 접촉을 거부하는 명분은 북한이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는 유엔 인권위와 총회의 북한인권결의가 인권고등판무관실과 북한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인권고등판무관실과 북한의 기술협력이 이루어지려면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에 양자의 접촉 관련 문구를 삭제하거나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수밖에 없음
- 북한은 또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난민고등판무관실과의 접촉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난민판무관실은 탈북자와의 면담과 그 결과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계

속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금까지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보고해왔다고 판단되지만 북한은 그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보고관의 임명 역시 유엔 인권위의 북한 인권결의의 산물이기 때문임
- 이밖에도 유니세프(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유엔개발계획(UNDP) 등도 북한인권 개선에 고유의 역할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음

○ 비정부기구의 동향 평가

- Amnesty International은 자유권과 사회권을 균형적으로 다루고 있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침해 원인을 북한의 정치·경제체제, 사회주의 경제블럭 와해, 자연재해 등 포괄적인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 비해,
- Human Rights Watch는 북한인권을 자유권 중심으로 다루면서 인권 침해 원인으로 주로 북한의 정치체제를 꼽고 있음
- 국제 인권단체와 인도적 지원단체 등 비정부기구도 북한 인권 모니터링과 생존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바, 앞으로 인권단체는 북한의 인권을 포괄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다루고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필요가 있고,
- 지원단체는 인도적 지원과 함께 개발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하겠는데,
- 이 두 가지 과제는 모두 인권인프라 확충을 통해 북한 스스로의 인권개선 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임

○ 종합

-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평가해보면 ①반복되는 비판 및 폭로 위주의 접근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한계가 있고, ②자유권 보호는 북한의 안보논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③북한의 당면한 생존권, 평화권, 발전권 향상을 위한 움직임은 걸음마 단계에 있고, ④행위자별 다양한 접근이 조정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 국제사회의 북한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보편성 및 자유권 중심의 주류 북

한인권 평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피로 현상 등으로 단기적으로 이와 같은 움직임에 큰 변화를 예상하기는 어려움

○ 탈북자 상황 개선방향

- 탈북자는 북한인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큰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들의 경험과 증언을 존중하되 그것이 북한인권 전체를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
- 탈북자문제 발생의 근본원인은 북한의 식량난과 남북분단 그리고 북한의 낙후한 인권 상황이기 때문에,
-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국간 외교적 협력은 물론 대북 경제 지원 및 협력, 남북화해협력,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정부의 노력과 국제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김태천. “대량난민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한국인권재단 편. 『21세기의 인권Ⅱ』. 서울: 한길사, 2000.
- 이규영. “유럽연합의 대북한인권정책.”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3권 제2호 (2003 겨울).
- 이진영. “탈북자 기획망명 사태에 대한 중국의 반응.” 『정세와 정책』 통권72호(2002).
- 제성호. “해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향.” 『서울국제법연구』 9권 1호(2002).
- 최의철. 『유럽연합의 대북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Amnesty International. “North Korea: Human rights concerns.” Media Briefing. 24 November 2006.
- _____. “Starved of Rights : Human Rights and the food crisi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nuary 17, 2004.
- Human Rights Watch. “Invisible Exodus: North Korea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vember 2002.
- _____. “North Korea: Border-Crossers Harshly Punished on Return.” March 6, 2007.
- Kim, Chun-Sung. “The Refugeeship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and the Role of Related Nations.” 『한국문화연구』 제6집(2002).
- Muntarbhorn, Vitit.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61/349. 15/09/2006.
-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Refugee Crisis: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sponse*. December 7, 2006.
- Visit of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ofessor Vitit Muntarbhorn to the Republic of Korea. PRESS STATEMENT. 14-18 December 2006.

재중 탈북자 인권관련 전문가 간담회 자료

재중 탈북자 현황과 문제 -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노 귀 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재중 탈북자 현황과 문제

-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노 귀 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목 차 >

- | | |
|-----------------|--------------------------|
| 1. 장기 체류 탈북자 경우 | 4. 잠재적 탈북 문제 |
| 2. 최근 탈북자 경우 | 5. 탈북자에 대한 관심과 인권 차원의 대책 |
| 3. 여성 문제 | |
-
-

1. 장기 체류 탈북자 경우: 20대 남매

1) 중국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빠(A)는 1996년 중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고 고난의 행군시기를 맞아, 아버지와 중국으로 탈출했다. 중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족(漢族)처럼 되기 위해 공부를 했다. 언어, 지리, 역사, 풍습을 중국사람보다 더 많이 알 정도로 공부했다. 중국어는 테이프를 반복해 들으면서 공부했다.

말이 익숙하면서 조선족이 많이 없는 천진 등지에서 일했다. 조선말과 중국어를 다 잘해서 어느 정도 벌었다.

2005년 여동생(B)을 데려와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이었다. 남한에 대한 것은 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한겨레’가 진보적인 신문이라는 것까지 알

고 있다. 여동생도 말씨는 거의 서울말로 바뀌었고, 패션 감각은 서울의 20대 아가씨 수준에 맞추고 있었다.

오빠는 한 식당에서 회계를 볼 정도로 능력이 있는데, 신분 때문에 800원 정도만 받고 일했다. 월급에 불만이 많았다. 자주 일자리를 옮기는 것은 신분이 알려질까 두려워서이다. 잠시, 한국사장 집에서 일했는데, 자기 능력보다 임금을 덜 준다고 생각하여 그 일도 그만두었다.

위조 신분증이 있었는데, 한어를 잘 하기 때문에 걸리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 그런데 중국이 신분증을 교체하면서 매우 불안해 졌고, 이를 기회로 아예 정식 신분증으로 만들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돈이 몇 만원 든다고 하여 엄두를 못 내고 있다.

한 한국사장은 이 두 남매를 좀 돌봐주었다고 했다. 여동생을 착실한데, 오빠는 그렇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여동생은 이제 한인 사장이 있는 산둥반도 한 호텔에서 일한다. 오빠도 그곳으로 가서 여동생의 협력을 받아 호텔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신분증 검열만 없으면 '북한티'를 완전히 벗고, 중국사람 또는 조선족으로 알 정도로 자리를 잡은 셈이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불이익이 많다.

2) 한국입국 시도

아버지와 함께 운남성에서 라오스 국경으로 넘어가다가 체포되었지만, 중국말을 잘 해서 모면할 수 있었다. 나름대로 주도면밀하게 시도한 일인데 실패하고, 체포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3) 아버지의 죽음

2004년 겨울 아버지가 병으로 죽었다. 병이 들었을 때, 병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 현금을 주지 않으면, 주사약을 중간에 뽑아버리는 비정함이 있었다. 그런데 집에서 혼자서 아버지의 임종을 맞았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사망진단은 확실하게 신분이 드러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혼자서 주검을 병자처럼 담요로 덮어 업고 산으로 가서 매장했다.

4) 공부에 대한 열망

오빠는 영어나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한다. 중국에서 살기 때문에 중국어는 쉽게 공부했다. 역사, 지리는 자습이 되었다. 영어는 아무리해도 안 된다. 책만 있어도 고 급이다. 생활난으로 공부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된다.

5) 문제

처음 만났을 때, 매우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며 주위 경계를 심하게 했다. 먼저 불안감을 누그러뜨리도록 상담을 하듯이 접근했다. 그는 영리한 청년이었고, 또 공부에 대한 열망이 강했고,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언어능력을 보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자질이 되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아버지가 병사한 문제처럼, 죽음을 맞아야 할 때에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2. 최근 탈북자 경우: 20대 접경지역 여성

2006년 11월, 우연히 조선족 집에 머물고 있던 20대의 처녀(C)를 소개받았다. 점심식사를 하기 전, 나는 권경업의 시 「미래로 가는 지도」를 써 놓은 엽서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풀었다. 통일을 생각하고, 대화를 친숙하게 풀기 위해서다.

함께 온 할머니가 2006년 5월 도문으로 물건을 보냈는데, TV 5대, 마션(미싱) 4대 등과 옷가지였다. 통관을 위해, 피자크(가족잠바)를 세관장에게 주었다. 또 통관을 위해, 남양 세관에서 한국상표를 몽땅 뜯었다.

1) 북한의 생활

집에는 텔레비존, 냉동기, 녹상기, 녹음기, 선풍기 등이 있다. 2005년 단속을 세계 해서, 씨디, 테프 밀수로 많이 들어오는 것을 단속했다. 씨디는 1알에 500원 한다.

2003년 한국영화 “육망의 바다”를 봤다. “친국의 계단:..부러운 것도 있고, 백혈병

으로 죽게 되는, 남녀사랑이야기가 여기는 없는데, 한국영화에서 많이 본다.

자기는 지배인으로 출세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원장, 지배인은 간부 비준과에서 해야 하고, 돈이 많아야 하고, 보면 힘들어 하는 것이 보인다.

학교생활은 쌀 보내고, 교복 사 입고, 무도장 갈 옷도 사고(415행사 등), 소비돈도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학교에 못 간다. 교원들에게도 레절로 인사를 해야 한다. 자기 고향은 중국과 가깝다고, 과일을 교원에게 가져다 준다. 학교생활 때, 교도대 훈련 3달, 농촌지원 1달, 전적지 답사 1번 등 활동을 하였다. 할머니도 당원인 경우 공부를 해야 하고, 저래서 씨끄럽다. 조직생활이 힘들다. 그렇지만, 남자들은 입당 안 하면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하고, 축에 끼지 못한다. 간부 기준으로 입당/대학졸업은 기본이고, 돈이 있어도, 권력이 없으면 안 된다. 큰 회사 사장도 검찰기관에서 검열 나오면, 찢찢 매고, 검열 받으면 해임되고, 검찰이 가장 무섭다.

<학교생활>에서 교원들도 죽고, 전공과목과 상관없는 과목을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정열적으로 교육하지 않는다. 지리 선생님이 물리 수학도 가르치고, 지난 10년 동안 학생들은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 아이들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청소년림>이 있어, 나무를 심을 때, 선생님들은 산에 올라가지 않고, 남학생들은 나무를 던져놓고 놀다가 내려오고, 그래도 여학생들은 나무를 복돋아 심는다.

2) 중국과 비교한 소감

조직생활이 없는 것이 자유롭게 보였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조직생활이 힘들었다. 북한에 있는 중국 상품은 여기 상품과 비교해 가장 싸구려였다.

3. 여성 문제

1) 매춘

** 아가씨(D), 연길 **에서 매춘을 하고 있는데, 분수에 넘치는 집에서 살면서 좋은 옷을 입고 지내고 있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 거래 이외의 접촉은 피하고 있다. 그녀는 중국을 드나들며 밀수를 하였는데, 사업에 실패를 해서 많은 빚을 졌다. 그

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춘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D의 애인H가 전해 준 말이다. 그녀가 애인에게 ‘자기를 책임 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 H도 최근에 자기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다. 신분증을 만드는 일, 새 일자리를 구하는 일로 심양 등지로 다녀왔는데, 도둑이 셋방에 둔 모든 물건을 다 훔쳐갔다. 또한 B는 자기 애인이 하고 있는 외양을 보고 모든 일을 짐작을 한 터라 마음이 돌아섰다. 결혼까지 생각한 대상이었는데,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마음속으로 결정했다고 H는 말했다.

또한 단동에서 한국인 사업가한테 들은 바로는, 식당의 복무원, 외화벌이 일꾼으로 나온 여성들까지 매춘을 한다고 했다.

2) 결혼

중국의 시골 남성은 결혼 적령기를 넘기고도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여성들이 해외로 결혼 또는 취업을 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탈북여성이라도 배우자로 구하고, 이 때문에 인신매매가 있기도 하고, 사실혼 관계로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탈북자는 호구가 나오지 않고, 발각되는 경우 강제 송환을 당한다.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 그런 상황이 되면, 생이별과 어린 아이 양육이 큰 문제가 된다.

4. 잠재적 탈북 문제

1) 사업가를 꿈꾸는 욕망가 한 사람

○○에서 2006년 10월에 나온 50대(E)를 만났다. 그는 몇 년 전 국경지대 한 도 시에서 머물 때, 정주영의 자서전을 3번이나 탐독을 했단다. 그는 중국에는 처음 나왔는데, 비자를 받기 위해 1년이 넘게 걸렸고,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공작을 했다고 한다. 그는 도문-연길-심양-단동으로 들어왔다. 돈이 될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단동까지 가지고 갔기 때문에 짐값을 물고, 별로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런 일들이 모두 처음이기 때문에 경험이고 공부하는 비용이라고 생각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내가 도울 수 있겠다는 암시에 대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나는 기업을 하고 싶었는데 소원을 성취하지 못했다.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성공은 성공했을 때 말할 수 있다. 아직 공론에 불가하다. 아직 여기 온 지 보름도 안 된다. (하지만 그는 뭔가 성공을 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가진 듯하다).

-나는 나이가 황혼기에 들었다.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돈이란 참 이상한 물건이라, 생존과 함께 돈이 떨어지면 목숨도 끝이다. 돈을 만드는 게 간단치 않다. 세 대주는 고지식해서 7년을 놓쳤다. 남들은 아파트에 10만 달러를 쌓아놓고 산다.

2) 중국, 욕망의 확대 재생산 공간

그는 나와 몇 차례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꿈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아무런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자기를 믿고 밀어주어야 한다. 헤어지면서 나에게 꼭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암시적으로 말했다.

3) 국경수비대

지난, 2월 4일 데일리NK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회령지구 국경경비대 1개 소대 가량이 중국으로 탈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집단의 탈출 경우는 정치적 이유가 크겠지만, 불만이 많은 국경의 병사가 탈북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는 공감된다.

E의 경우 비자를 받아서 나왔지만, 또 돈(성공)에 대한 개인적 욕망이 강해, 희망이 별로 없는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국경의 군대에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토비’가 되어 밤중에 중국쪽으로 넘어가 먹을 것 등을 훔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군대도 잠재적 탈북자가 될 수 있다.

5. 탈북자에 대한 관심과 인권 차원의 대책

- 탈북 압송자 인권: 탈북자 인권 문제는 종종 알려진 바대로 심각한 경우가 많다. 중국이 인정하지 않는 탈북자 문제와 ‘연류된’ 사람의 인권문제도 심각하다.
*2006년 10월: 탈북자 관련 활동 목사 체포, *2007년 1월: 미국 국적 선교사 심양에서 체포. 그는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탈북기획 활동을 서투르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도 쉬쉬하면서 전한다. 내가 중국에 머무른 기간 내내, 중국의 공안은 아주 엄격하게 탈북자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탈북자와 관련한 일이면, 사람들은 극도로 보안에 신경을 쓰거나 아예 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려고 했다.
중국 공안은 조선족, 화교 등 조선장시(대북 무역)를 하는 사람들에게 북한 정보 수집을 요구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족 중에는 북-중 양다리를 걸치고 한국행 탈북 등을 알선하는 일을 겸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 재중 탈북자의 신분보장문제, 사실혼관계자 호구 인정이 필요하고, 제2, 제3의 이산가족 문제에 인권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 교육, 의료, 생계활동 상의 불이익을 개선하는 방안 강구.
- 쫓기고 있는 사람의 불안심리: 심리치료가 요구되는 상황
- 북-중 대타협: 탈북자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 요구

1) 일자리 대책: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 ① 한-중-북 협력으로 ‘불법체류자 방문 취업제’와 같은 취업 자격을 주는 문제,
- ② UNDP의 두만강개발계획과 유사한 국제적 **마살플랜**으로 탈북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 생존의 문제

2006년 11월, 나는 세 번째로 도문 지역을 둘러보았다. 2005년 7월에는 구경꾼처럼, 2006년 2월에는 뭔가 모를 갈등을 느끼며 보았다. 이번에는 나름대로 사람과 만남을 이뤄냈다.

11월 22일 도문에 갔던 날, 겨울답지 않게 춥지 않던 날씨가 눈비가 내리고 갑자기 뽕뽕 얼어붙는 듯했다. 그때 따뜻한 차 한 잔은 마음까지 녹이는 열이 되어주었다. 작은 것이지만 필요에 따른 가치는 그만큼 컸다. 단동, 훈춘, 도문 등 변경지역을 넘나드는 평범한 서민들의 보따리에 담긴 작은 소망들처럼 말이다.

조-중 변경을 다리로 잇는 지역을 교두(橋頭)라고 하며, 세관업무를 보는 곳을 해관(海關)이라고 한다. 도문처럼 작은 해관은 대개 여권이 아니라 출입경통행증으로 드나든다. 한 할머니는 1개월짜리 통행증으로 내몽고까지 다녀왔다. 연길에서만 인척의 도움으로 현웃가지, 재봉틀, 텔레비전 등을 구입하여 보자기나 마대로 짐을 꾸렸다. 도문과 남양 사이 교두를 오가는 9인승 크기 승합차가 있는데, 운전석 뒤에 몽땅 짐을 싣고 남양쪽으로 갈 때가 많았다. 다 실릴 것 같지 않던 할머니의 짐도 차곡차곡 실으니까 다 들어갔다.

나는 주위 사람들 틈에 섞여 그 짐 신기를 거들었다. 거기에는 일용품과 손자에게 먹일 과자며, 당장 끼니가 될 쌀자루까지, 일상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시장에 내다팔 '상품'으로 가져가는 물건 대부분이 헌것임을 이야기로 나누면서 알았다. 할머니는 부모를 잃은 손자를 거두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가.

할머니 여정을 상상해 보자. 소금실이 밀수출 보낸 아내가 “아하, 무사히 건넌을까,/ 이 한밤에 남편은/ 두만강을 탈없이 건넌을까?”로 시작하는 김동환의 서시시 「국경의 밤」에서처럼, 생계를 위해 희망을 걸고, 마음 조리는 기다림이 있는 변경지대는 예나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이런 민초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일제강점, 분단에 이어지는 21세기 동북아 공간을 내다본다면, 문제를 체험적으로 사고하지 않을 수 없다. 생계를 위한 변경의 밀무역이나 불법적 국경이탈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제 전근대적 국경을 넘어서는 새로운 틀로써 상상함은 시대적 요청일 것이다.

3) 변경문화와 마살플랜

그곳이 조-중 국경이기 때문인가? 우리는 변경의 문화에 대해, 공존의 문화철학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들러 가는 생각이지만, 중국에서 출판문화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 연변인

민출판사에서는 초심=편집, 복심=편집주임, 종심=총편집(부사장)의 검열을 거친다. 심열실에서 총편을 대신해 심열보고를 쓴다. 아직도 문화적으로는 사회주의 체도에 묶여 시장화, 상품화가 덜 되어 있었다.

물질문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 백화점과 시장은 우리 일상의 자본주의시장과 다를 바 없는데, 출판과 같은 문화산업은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는 현실,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전망해야 하는지. 이 지체 현상이 심화되면 문화적 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한족, 조선족, 한인, 탈북자/조선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면서, 앞으로 계속 공존의 폭을 넓혀가야 할 공간인 동북아 지역을 보면, 각각의 이해가 상충하면서 공존과 평화의 길에 못 미치는 ‘문화지체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탈북자문제는 한-중-북의 정치적 문제이자 지역의 잠재적인 변수가 되고 있다. 중국 조선족은 탈북자문제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한편, 조선족의 해체 위기에 놓여있다. 그들은 자본시장을 찾아 한국으로, 중국 관내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조선장시’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돈이 되는 일에 종사할 뿐이다.

단동에 갔을 때, 여러 사람한테서 들었던, “북은 다 된 나라다”고 한 말을 곱씹어 보았다.

북에서 주민들의 성분조사만 아니라, 재산조사도 끝났다고 한다. 단동에 갔을 때, 나는 무슨 소굴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심양영사관의 총영사를 만나러 갔다. 한국영사관 입구에 비자를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었다. 입구는 철망으로 둘러치고, 엄격한 통제를 했다. 나를 안내하는 사람이 왔는데도 여권위조검열까지 한 다음에 들여보내 주었다.

총영사는 중국한족과 조선족이 대북 사업에서 차이가 있는 배경이 있다고 말했다. 화교들이 돈이 많이 있으므로, 그 배경에 의해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대북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영사는 남북관계만 정태적으로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제관계 속에 복잡한 변수, 여러 경우의 수를 동시에 보고, 우리가 가장 유리한 현실적 선택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어느 것이 국가이익에 맞는가, 현실적인가 그런 문제를 더 중시하는 것 같았다.

현실 이익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은 철학으로 재해석되고, 재생산된다.

그런데 조선족은 전통문화정신에서 단절되어 있다. 중국은 문화혁명을 통해 사

회주의문화 속에 남아있던 전통을 모조리 단절시키고자 했다. 연변대학 예술학교 대학원 학생과 대화를 하면서, 조선족의 무용, 음악 등에 형식 일부 전해지고 있지만, 거기에 담긴 정신을 담론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현재,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열려 있는 조-중관계를 비집고 우리가 동북아공생의 시대로 만들어가고자 한다면, 그것을 담보하는 문화철학에 대한 고민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느꼈다.

평화를 목표로 한다면, UNDP에서 진행했던 두만강개발계획 같은 것을 탈북자문제를 흡수할 수 있는 마샬플랜이 될 수 있도록 국제적 관심을 다시 불러와야 할 것이다.

재중 탈북자 인권관련 전문가 간담회 자료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한 현실적, 점진적 그리고 건설적 접근

이혜영 · 서대교 (BASPIA 공동대표)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한 현실적, 점진적 그리고 건설적 접근*

이혜영 · 서대교 (BASPIA 공동대표)

< 목 차 >

- | | |
|-------------------------------------|--|
| 1.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한 “외부”의
주요 접근들 | 3. 재중 탈북 여성들의 유형별 분류 |
| 2.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
내부”의 주요 대응들 | 4. 재중 탈북자들의 지위 향상과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발점 |
-
-

1.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한 “외부”의 주요 접근들

1)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국제 캠페인 및 국제법적 접근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과 의정서(1967)
- ‘현장 난민 (Refugee Surplus)’: Human Rights Watch (2002), 비릿 문타폰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2004)
- 규범적 또는 선언적 구호에 그치는 경향이 있으며, 모든 탈북자들의 현실이나 필요를 반영한 접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본 발표문 아직 완성된 원고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수 및 보 과을 거치게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기획 망명’을 통한 국제 여론의 환기와 외교적 압력 접근

- 중국 내 외국 대사관/영사관 및 중국 외교부 진입 시도
- 기획 망명을 시도한 탈북자들의 제 3국을 통한 한국행 성사
-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중국의 탈북자 및 탈북자 지원 단체들에 대한 탄압 강화 및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부추기는 상황에 대한 강한 반발과 같은 부작용을 낳은 것으로 판단됨. 한시적인 대안일 수 밖에 없었음.

3) ‘난민촌’ 건설이라는 대규모 탈북자 수용 및 보호 시도 접근

- 몽골이나 다른 제 3국에 탈북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촌’ 건설 시도
- 대량 탈북 또는 북한 내부의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도/우려
- 중국이나 주변 국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고, 난민촌 건설의 의도가 모호하며, 중국에서 다양한 환경에 처한 탈북자들의 일반적 상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 미국의 ‘2004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한 직접적인 개입 및 미국 망명 촉진 접근

-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상/하원에서 통과됨으로써,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의 법적 근거 및 재원 확보
- 재중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들에게 분배될 예정이었던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2007년 3월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음. (중국의 강한 반발 예상, 예산 지원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난민촌 건설의 비현실성)
- 재중 탈북자들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미국의 일부 보수적인 정치/종교인들의 로비에 떠밀려 다소 상징적인 의미로서 채택된 법안으로 판단됨.

5) 소위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고 불리는 탈북자 중국 탈출 지원 접근

-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목적을 가진 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제 3국으로 통해 한국으로 입국시키고 있음.

-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중국 심지어 북한에서 부터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늘면서, 소위 ‘브로커’라 불리는 사람들의 활동이 활발해 짐.
- 중국의 강제 송환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후의 선택이자 어떤 경우에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그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들 - 체포와 강제송환, 인신매매, 사기, 성적 또는 신체적 학대와 같은 인권 유린 - 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 후의 복잡한 결과들 - 예를 들면, 중국에 남겨진 가족, 한국에서의 부적응 등 - 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2.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 내부”의 주요 대응들

1) 중국 조선족 사회의 역할과 대응 방식

- ‘취약한 상태의 탈북자들에게 비쳐진 두 얼굴’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중심으로 동북 3성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탈북자들 생존을 위한 ‘완충제’ 역할을 해 옴. 탈북자들의 생존과 중국 내 체류에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와 강제 결혼 또는 탈북 여성들의 특히 취약한 상태를 이용해서 친인척들의 결혼 상대로 반강제 결혼을 시키는 일 등 부정적 역할을 하기도 함.
- 특히, 동북 3성의 농촌 마을들에는 탈북 여성들이 조선족이나 한족 남자와 결혼 형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빈번함. 그러한 경우,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나 심지어 마을이나 현의 중국 공안에서도 이들의 존재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중국 조선족 사회 중에서도, 조선족 교회들이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옴. 한국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도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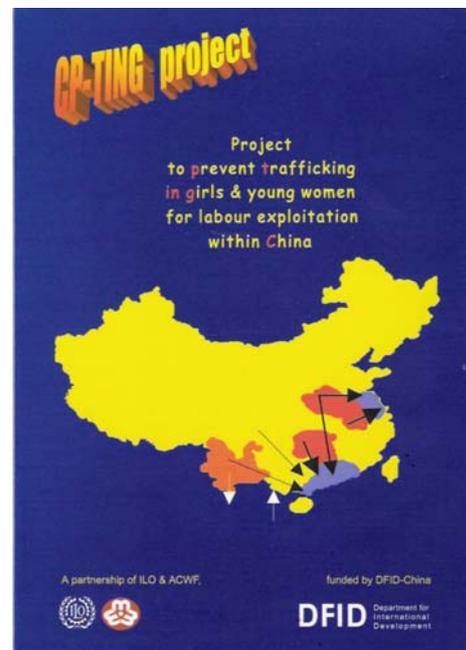
2) 중국 당국의 대응 방식

- ‘일관적이지만 소극적인 강제송환 정책 그리고 지역별 편차’
- 중국 정부는 일관적으로 모든 탈북자들은 ‘불법 경제 이주민’이며, 중국은 북한과의 양자 협약에 따라 불법 월경자들을 송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중국으로 건너와 국경 근처에서 강탈, 주거 침입, 심지어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일부 탈북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중국 당국의 대응은 정당성이 없지 않음. 중국에서의 범법 행위 가능성 그리고 결혼을 포함한 중국에서의 “생존 수단”의 결여로 인해,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단속이나 체포의 타겟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함. (현재는, 재중 탈북자들의 대다수가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중국 당국의 탈북자 색출, 체포, 강제송환이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음. 특히 중국 남자들과 결혼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북한 여성들의 경우, 자신들의 존재가 주변에 알려져 있는데도 수 년간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음.
- 하지만, 주민의 신고가 들어간 경우나 상부에서의 특별 명령 또는 타 관할 지역 공안(예를 들면, 변방 부대)의 출두와 같은 상황에서는 체포와 송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省), 시(市)나 현(县), 진(镇)이나 촌(村)과 같이 행정 구역이나 단위에 따라서 각각 중국 당국의 탈북자들(특히 결혼 형태로 살아가는 탈북 여성들)에 대한 처리 방식에 많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일부 지역에서는 탈북 여성들에 대한 암묵적 보호가 일상화된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기적인 단속과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결혼 형태로 살아가는 탈북 여성들의 중국 체류가 장기화되고 이들이 중국에서 낳은 자녀들이 취학 연령에 이르면 따라, 아이들에 대한 호구(戶口)(호적)를 내주는 지역이 생겨나기 시작했음.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러한 탈북 여성들에 대해서도 관할 지역의 공안에서 나와 조사를 한 후, 문건을 작성하고 (가족)사진을 찍어가는 일이 있었다는 믿을 만한 보고가 있음.

3) 중국 내의 국제 기구나 NGO들의 대응 방식

- ‘정보와 접근의 부재 그리고 무관심’

-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국제 기구나 국제적 NGO들은 북경에 사무소를 두고, 중국 서남쪽의 동남아시아로 넘어가는 관문인 운남성(성도: 곤명)이나 중국 동남 또는 중앙 지역의 성들(강소성, 안휘성, 광둥성 등)에서는 특히 최근 몇 년간 활발하게 여성, 아동, 보건, 교육, 이주, 노동 관련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음. (예: ILO, Save the Children)



<ILO가 영국 국제 개발협력청의 지원을 받아 중국 최대의 여성 단체인 중화전국부녀연합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 중인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인신매매 퇴치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책자의 표지 사진>

- 이에 비해, 중국 동북 지역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길림성과 요녕성을 포함해서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북 3성 지역에서의 활동은 거의 전무함. (지정학적 고립성)

- 재중 탈북자들의 존재와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탈북자 문제가 북한의 인권 문제와 더불어 정치적, 이념적 논란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중국 내의 국제적인 기관들의 경우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지는 경향이 있음.

3. 재중 탈북 여성들의 유형별 분류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이 크게 체류 기간, 체류 형태, 체류 지역으로 구분을 한 후, 보다 세부적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음.

체류 기간	장기	송환 경험	없음
			있음
	단기	송환 경험	없음
			있음
체류 형태	결혼	자녀출산여부	자녀출산
			자녀 미출산
		결혼 경로	인신매매
			반강제 소개
			동의/자청
		'남편'의 민족	조선족
	한족		
	경제 수준	극빈	
		보통	
		보통 이상	

(계 속)

체류 형태	미결혼	현재 동거인	북한 가족/친척
			중국에서 만난 지인
			기타
		경제 활동	농사
			월급 노동자(종업원, 가정부 등)
			유형업소/성매매업소
			경제 활동 전혀 못함
			기타
체류 지역	도시	지역	동북 3성
			동북 3성 외
	농촌	지역	동북 3성
			동북 3성 외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의 탈북 여성들이 현재 중국에 있다고 볼 수 있음.

1) 유형 1: 장기 체류/결혼 형태/농촌 지역 거주자

-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 여성들의 상당수가 이 유형에 해당함. 동북 3성 또는 다른 중국 내지의 성들(산둥성, 하북성 등)의 농촌 마을들에서 조선족이나 한족 남자들과 살고 있으며, 길게는 10년 가까이 장기 체류한 경우임.
- 주로 2000년 이전, 북한의 식량난이 가장 심각했을 때 중국으로 넘어와 인신매매나 반강제 소개를 통해 중국 남자들과 결혼 형태로 살게 됨.
- 대부분 자녀를 출산했는데, 아이가 6~9살 취학 연령에 이른 경우가 많음. 간혹 북한에서 데려 온 자식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함께 사는 경우도 있지만, 고아원 같은 시설에 맡기거나 다른 곳으로 떠나 보내는 경우도 있음.
- 일부 지역(예: 흑룡강성)에서는 체포나 송환의 경험 없이 장기 체류한 여성들도 많지만, 특히 연변과 같이 국경에서 가까운 지역에서는 1-2번 이상 북한으로 송환되었다가 다시 현재 살고 있는 중국 가정으로 돌아온 경험을 한 여성들이 많음.

- 대부분 최극빈층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신분 상의 문제에 더해 열악한 중국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음.

2) 유형 2: 장기 체류/(미)결혼 형태/도시 지역 거주자

- 대부분 위의 유형 1에서 출발하였으나, 가난하고 고립된 농촌에서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연길이나 요녕성 성도인 심양뿐 아니라, 동북 3성을 벗어나 산동성의 청도처럼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한 지역들에서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경우임.
- 중국에서 어느 정도 장기 체류를 했기 때문에,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조선족이나 다른 북한 여성들과의 연결을 통해 비교적 쉽게 장거리를 이동해서 원하는 장소로 갈 수 있음.
- 한국 기업이나 식당에서 일자리를 찾기도 하지만 신분의 위험과 많은 유혹들 때문에, 흔히 노래방이나 술집 같은 유흥 업소나 '민박' 등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많음.
- 번 돈으로 중국에서 꾸린 가정의 경제에 보태기도 하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일부 보내주는 경우도 있음.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도 함.

3) 유형 3: 단기(장기) 체류/미결혼 형태/농촌 지역 거주자

- 비교적 최근 북한에서부터 부부나 일가족이 함께 나온 경우, 여성들이 자신의 북한에서부터 함께 온 남편과 계속 같이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음. 함께 지낼 경우 사람들의 눈에 띄는 도시보다는, 외진 농촌 지역에 숨어 들어가 조선족들의 도움을 받거나 낱품팔이를 해서 하루 하루를 근근이 먹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음.
- 50~60대의 중장년층의 북한 여성들 중에 비교적 최근 자식이나 친척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 왔다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나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 조선족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거나 혼자 사는 병들고 나이든 조선족 남자네 집에 들어가 살림을 해 주면서 임시로 기거하는 경우도 있음.

4) 유형 4: 단기 체류/미결혼 형태/도시지역 거주자

- 유형 2와 마찬가지로 농촌 지역이 아닌 도시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주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함. 하지만 비교적 최근, 심지어는 지난 1~2년 사이에 처음 중국으로 넘어와, 곧바로 도시 지역으로 와서 일을 하는 경우도 늘어 나는 추세임.
- 북한을 떠나기 전부터 중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었거나 먼저 중국에 간 가족이나 친인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중간에 인신매매를 통한 강제 결혼의 위험을 피해 곧장 도시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게 되는 경우임. 물론 최근에 중국에 도착한 여성들 중에도,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가 얼마 후 바로 도망쳐 나와서 도시 지역으로 이동해 온 경우도 있음.
- 도시 지역의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20-30대의 젊은 여성들이라면, 비교적 최근에 중국으로 온 40-50대의 중년 북한 여성들이 도시 지역에 체류하면서 중국인 가정의 가정부(보모)로 일하거나 식당/노래방 등의 주방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이들은 대부분 북한에 남아 있는 자식들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내주기 위해서 계속 중국에 남아 생활하기를 원함.

4. 재중 탈북자들의 지위 향상과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발점

- 장기 체류/결혼 형태(자녀 출산)/농촌 지역 여성들에 대한 전략적 집중

1) 중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의 조짐들

중국 동북 3성 지역 성(省)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변화 모색의 조짐¹⁾

탈북자 문제 해결에 중국 정부가 보다 호의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우선,

1) 본 내용은 2005년 11월, 평화네트워크와 오마이뉴스가 공동주최한 북한 인권 강좌에서, BASPIA의 공동대표 이해영, 서대교가 발표한 글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지난 2004년 12월 1일,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 발표자로 초대된 중국인권연구협회(China Society for Human Rights Studies)²⁾의 양 쉹밍(Yang Chengming)씨는 “중국 내의 북한인들: 도전과 해결책(North Koreans in China: Challenge and the Solution)”이란 주제의 발표문을 제출하였다. 개인 사정으로 양 쉹밍씨가 직접 한국에 와서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발표문 가운데는 매우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불법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 하에서는 현재의 탈북자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실시하고 있다고(‘has carried out’) 명시한 것이다.³⁾

- a. 탈북자들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자는 거주 허가(residence permission)를 받을 수 있다.
 - (a) 중국인과 결혼한 지 3년 이상 되어 아이를 낳고 법과 규범을 준수하는 북한 여성.
 - (b) 현재 중국에 있는 친척과 동거 중인 북한 여성이나 아동 중,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자활능력이 없고, 중국에 남기를 주장하는 자.
 - (c) 6.25 전쟁 이전에 중국인이었거나 중국인 부모를 가진 북한인으로 생존을 위해 중국으로 귀환한 자.
- b.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탈북자들은 발견될 경우 북한으로 송환되는 데, 특히 법이나 규범을 어겼거나 2000년 이후 중국에 입국한 경우에 그렇게 한다.
- c. 중국은 매년 북한을 원조하고 있다.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불법 탈북자의 증가에 따라 최근 중국은 북한에 다량의 쌀, 밀, 석탄과 전기를 제공하였다.

2) <http://www.humanrights-china.org/index.as>, 이 웹사이트에서는 China Society for Human Rights Studies(CSHRS)가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소개를 토대로 중국의 목소리를 바깥 세상에 전달하는 가장 권위 있는 네트워크들 중 하나로서, 중국의 대학이나 연구소들의 인권 전문 학자들과의 연계와 인권분야에서 국제적인 대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3) North Koreans in China: Challenge and Solution, Chengming Yang, Director, China Society for Human Rights Studies. 2004년 12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의 발표논문집에 수록.

d. 북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보내는 인간 장사꾼들은 중국 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 길림성 일부 지역들에서 탈북 여성들에게 임시 거주권 또는 유사한 보호를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

- 실제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내의 일부 지역들에서는 2000년 이후, 중국 남성들과 결혼 형태로 살고 있고 중국에서 자녀를 낳은 북한 여성들에 대해서, 현지 지방 공안에서 찾아와 신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진을 찍어서 이를 문건으로 작성하는 일이 있었다는 믿을만한 보고들이 있음.
- 일부 지방 공안 또는 파출소에서는 공공연하게 탈북 여성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한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함.

최근, 연변조선족자치주 내의 특정 지역에서는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에 대해 정식 절차를 거쳐 호구를 올려주기 시작했다고 함.

- 기존에는 뇌물성 거액(2,000 위안 이상)을 제공하거나 북한 여성들이 강제 송환되어서 없을 때에만 가능했던 북한 여성이 낳은 아이의 호구 신청을, 최근 마을 부녀회장과 파출소에서 직접 찾아와 500 위안만을 받고 등록을 해 주기 시작한 지역이 생겨나고 있음.

2) 단기적 접근: 합법화의 단계적 적용 + 경제적, 사회적 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및 긴급 지원 루트 확보의 필요성

- 현재 불법 이주자 신분의 탈북자들 가운데서, 특히 결혼 형태로 중국 지역 사회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으며 자녀를 출산한 북한 여성들에 대한 대규모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된 후, 이들에 대한 합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특히, 합법화가 이루어 질 경우 또는 이를 조건으로, 대부분 극심한 빈곤 가정에서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이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개발 프로그램들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함.

- 농촌뿐 아니라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의료 보건상의 문제와 같이 긴급한 지원이 요청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제 사회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루트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재중 탈북자들이 겪는 인권 문제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

3) 중장기적 접근: 빈곤, 이주, 인신매매, 강제결혼의 상관 관계 조명 및 이에 대처하기 위한 동북 3성과 함경(북)도를 포괄하는 협력 메커니즘 및 지원 전략과 프로젝트 개발

- 현재 재중 탈북자들(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도 비슷한 수준)의 대다수가 함경(북)도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함경(북)도 주민들이 빈곤, 이주, 인신매매, 중국에서의 강제결혼에 노출되거나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조건들을 밝혀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함.
- 중국의 성 단위의 지방 당국(예: 길림성)과 북한의 해당 지역(예: 함경북도) 간에 벌어지는 인신매매와 중국에서의 강제결혼을 포함한 이주 과정에서의 위험들에 대해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여성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기술 지원이 필요함. (중국 운남성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국경을 넘는 인신매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례들이 있음.)
- 이 과정에서, 관련된 인권 문제들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해야 할 권리 보유자(rights-holder)로서의 북한 주민들은 물론 그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킬 책임이 있는 의무 부담자(duty-bearer)들에 대한 ‘역량강화’와 ‘참여’가 필수적인 조건이 되어야 함. (‘권리에 기반한 접근(Rights-Based Approach)’ 적용)



재중 탈북자 인권관련 전문가 간담회 자료

『재중 탈북자의 현황과 실태』,
『한국 가족에 의해 유도 입국 경험 사례』,
사례발표

새터민 2인 인터뷰 자료

『재중 탈북자의 현황과 실태』, 『한국 가족에 의해 유도 입국 경험 사례』, 사례발표

○ 새터민 ○○○ 경험

- 2003년 4월 입국, 직업 전직 의사
- 1999년 중국 연길 여행, 직업적 특징으로 외부사회 접촉기회 많았음
- 고난의 행군시기(1994-1997) 사회불안, 삶에 대한 기대로 탈북결심, 중국 사촌이 10명 생활, 중국 생활 1년 후 한국 고모의 도움으로 한국 행(400만원 지원)
- 중국→베트남→캄보디아→태국→한국행(4개월)
- 탈북유형(합법적 탈북: 여권, 무역 등, 불법적 탈북: 도강 및 도주)
-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이중전략(남북한 정치적 이용, 사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라 생각, 국군포로 가족 송환문제도 한국을 자극하기 위한 전술)

○ 탈북의 상업화

- 돈만 있으면 한국행 가능
- 한국행에는 4개의 루트 존재, 돈의 지불능력에 따라 한국행 루트 결정, 브로커들이 확실히 처리해줌
- 4개루트(1. 비행기 1000만원 VIP 한국행, 2. 외교공관 800만원. 3. 중국 벗어나 외국행 200만원 4. 합법적 방법(위장결혼 등)400-500만원

○ 탈북자 최근 경향

- 한국행 추진 의향 낮아지고 있음(재중 탈북자의 경우, 한국에 대한 정보 많음, 한국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정착화된 중국생활 선호)
- 재중 탈북 노래방 여성의 경우, 중국에서 한달 평균 250-300만원 수입, 한국 생활에서는 불가능, 중국 체류선호,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이주노동자화 되는 경향
- 한국행을 원하는 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필요, 핵심은 브로커 비용
- 중국당국도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합리적 처벌 및 대처를 하고 있다고 봄, 사례소개 몽고 이동 체포 14명에 대한 처벌 과정 설명

○ 새터민 ○○○, 2005년 2월 입국

- 중국관련 무역업 종사, 남편 법관, 상당한 재산 소유, 20세의 딸과 월경하여 중국행
- 한국행을 결심하고 이사 간다는 핑계로 중국행
- 북한체제의 한계, 경제적 어려움, 딸의 미래를 위해 탈북 결심
- 중국→베트남 체로→캄보디아(1년 거주)→한국행
- 캄보디아 미국 기독교 단체 NGO의 도움으로 한국행

○ 새터민 ○○○북한사회의 생활상 및 체제의 한계, 살아온 인생의 단상을 설명

재중 탈북자 인권관련 전문가 간담회 자료

| 인 쇄 | 2007년 5월 일

| 발 행 | 2007년 5월 일

| 발행인 | 안 경 환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총괄팀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B/D 11층

| 전 화 | (02) 2125-9720 | F A X | (02) 2125-9733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